

심층-2017 : 2017. 07 28

창조농업 ICON

농식품 & 유통

심층연구

주요 수출품목 무역 핸드북

- 배의 대만 수출 -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

본 연구는 aT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에서 배의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및 기초가이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및 대만의 배 생산동향, 시장동향, 수출절차, 수출여건, 수출확대 방안 등에 대한 자료·분석 등을 요청해 작성된 것임

2017. 07. 28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 연구위원 최대일

<목 차>

I. 개 요	1
II. 국내 배 시장 현황	4
1. 생산현황	4
2. 유통현황	7
3. 가공현황	8
4. 소비현황	8
5. 수출현황	10
III. 수출 배 통관 절차	15
IV. 대만의 배 시장 현황	23
1. 대만 일반현황	23
2. 대만의 배 생산, 유통 및 소비 현황	24
3. 대만의 배 수출 현황	36
4. 대만의 배 수입 현황	37
V. 대만의 수입 통관 절차	41
VI. 식물검역제도	56
VII. 배의 대만 수출확대 방안	80
※ 참 고 문 헌	83

I. 개요

□ 배의 연원(淵源)

- 배의 학명은 PYRUS,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기과, 배나무속에 속함. 배 속(屬) 식물 원산지는 중국의 서부와 남서부로 여기서 세계로 전파되어 재배지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 개량되었으며, 크게 북방형 동양배(중국배), 남방형 동양배(한국배, 일본배), 서양배 3품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여 종이 있음.
- 북방형 동양배는 생육기간인 여름에 비가 적은 곳에서 잘 자라며, 대체로 크고 녹색이며 약간 떫은맛이 있고 중국에서 주로 재배됨. 남방형 동양배는 생육기간인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온난한 기후에 적합한 품종으로 둥글고 과즙이 많고 저장성이 강하며, 주로 한국, 일본에서 재배됨. 서양배는 비가 적은 곳에서 개량된 것으로 원뿔형 이지만 변이가 많음, 수확 후 후숙해서 먹으며, 돌세포가 적고 향기와 맛이 좋으며, 미국, 유럽, 칠레, 호주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음

□ 한국의 배 재배

- 중국의 농업기술서 제민요술(齊民要術, A.D 530~55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를 삼한시대부터 재배한 기록이 있으며, 고려 명종 때에는 배나무를 소득작목으로 권장했고, 조선 성종 때는 주요과수로 재배됨. 구한말에는 황실배, 청실배, 함흥배, 봉화배 등을 재배했으며, 청실배(靑實梨)는 춘향전에서도 언급하고, 왕실 진상품이었으며, 먹골배로 최근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음
- 근대적 방식의 배 품종 재배는 1906년 정부가 독섬에 12ha의 원예모범장을 설치하여 장십량, 금춘추, 만삼길, 태평조생, 적룡 품종과 서양배인 바틀렛 등 6품종을 시험재배 한 것임. 이후 1908년에 40여 품종이 추가 도입되고, 1944년에 이십세, 조생적, 조생팔달, 팔운 품종, 1945년에 향미 품종, 1955년에 압리, 청실리, 황실리, 박다청, 운정 품종이, 1960년에 군총조생, 명월, 자리, 신태양 품종, 1967년에 신수, 행수 품종, 1973년에 풍수, 조옥, 수진조생 품종 등이 도입 됨.

- 이후 국내 육성 품종인 황금배, 감천배, 추황배 등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화산, 원황 등이 추가로 보급된 이후 2012년까지 만풍배, 한아름, 슈퍼골드, 신화, 스위트스킨, 조이스킨, 설원 등 29개 품종이 보급됨

□ 배의 주요성분 및 효과

- 배에는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배즙은 갈증해소, 기관지 관련 감기 해소 천식, 가래와 기침을 없애주는데 좋음
- 펙틴성분은 혈압조절 효과,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고, 칼륨 나트륨 성분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됨
- 또한, 연육효소가 있어 고기를 연하게 할 때 갈아서 사용하고, 해독작용이 있어 숙취를 없애주기도 함

□ 한국 배의 주요 품종 및 특성

- 우리나라는 배 품종은 조생종으로 원황, 한아름, 진황, 녹수 등이 있으며, 중생종으로는 신고, 황금배, 화산, 금촌조생, 장십량, 만풍배 등, 만생종은 감천배, 추황배, 만황, 만삼길 등이 있음

<한국의 주요 배 품종>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 2015년 기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중생종인 신고로 전체 배 생산 농가인 15,229가구 중 88.4%인 13,463가구가 재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조생종인 원황이 3.7%인 571가구, 만생종인 감천배가 1.7%인 259가구 등임

<배의 품종별 생산시기 및 특성>

구 분	수확기	출하기	성출하기	저장출하기
조생종	8중~9상	8중~ 9중	8하~9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원형의 선명한 황갈색 이며 당도가 높음 · 육질이 연하며, 즙이 많고, 식미가 우수함 			
중생종	9중~10중	9하~10중	10하~2하	10중~6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원형, 담황갈색, 신맛이 적고, 당도가 다소 낮음 · 육질 연하고 즙이 많음 			
만생종	10중~11상	10중~11중	10하~2하	11중~8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에 황갈색을 띠고 과피에 갈색가루가 있음 · 신맛과 단맛이 잘 조화되며, 아삭한 식감으로 식미가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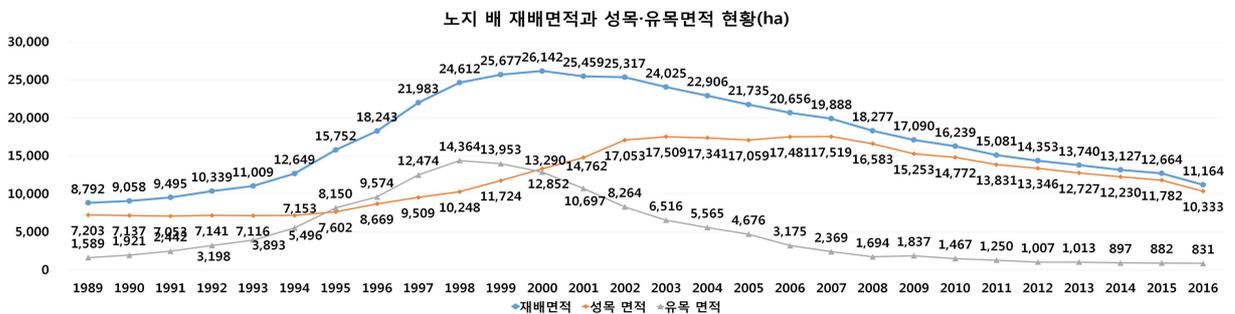
*자료 : 농촌진흥청

II. 국내 배 시장 현황

1.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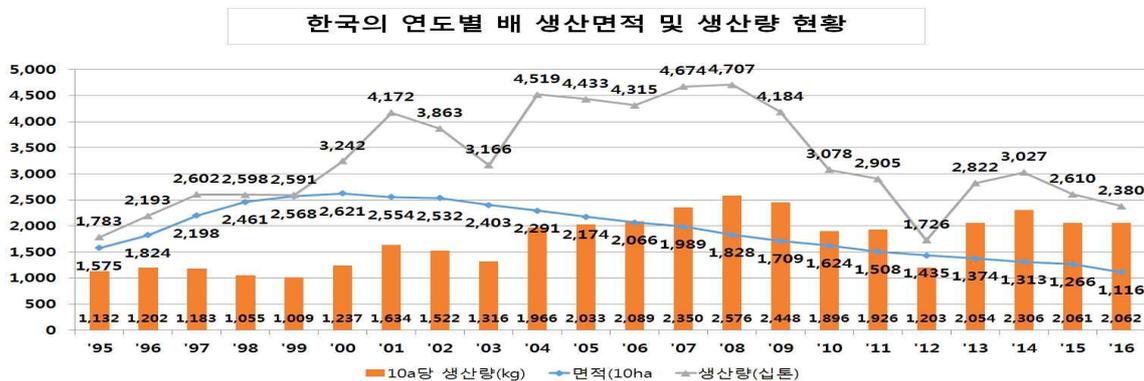
□ 한국의 배 생산량은 노령화, 도시화 확대 등에 따라 재배면적이 줄어들며 매년 감소하고 있음

- 배 재배면적은 2000년 26,206ha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11,164ha로 16년 동안 15,042ha(57.4%)가 감소 됨
- 노지 배의 유목식부 면적이 1989년 1,589ha에서 1998년 14,364ha로 증가하며, 성목 면적도 1995년 8,150ha에서 2007년에 17,519ha로 9,369ha(115%) 증가하였으나, 1998년 이후 유목 식부면적의 매년 감소와 함께 성목면적도 감소하고 있음



* 자료 : 통계청, 노지 과수 재배면적 현황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최대이던 2000년 324,166톤에서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재배 영농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여 2008년에 470,745톤의 최대 생산을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되며, 2016년에 238,014톤 생산



*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 배의 단위(ha) 당 생산량은 우량묘목 보급, 시비·토양관리, 봉지 씌우기 등 생산관리 영농기술의 발전에 따라 1995년 1.13톤에서 2004년 1.97톤으로 0.84톤 증가한 후 2016년의 단위당 생산량은 2.06톤으로 더욱 증가 됨
- 품종별 재배가구 비율은 중생종인 신고배가 전체 배 재배 가구의 88.4%를 차지 하고, 다음으로 조생종인 원황이 3.7%, 만생종인 감천이 1.7% 순임
- 중생종의 생산은 추석 및 수출과 연계되어 있어 신고 배는 전체 배 재배 가구가 2010년 88.5%에서 2015년 88.4%로 유지되고, 황금배는 1.3%에서 1.4%로 0.1%p 증가, 화산은 1.2%에서 1.3%로 0.1%p 증가한 반면, 조생종인 원황은 4.2%에서 3.7%로 0.5%p가 감소됨

〈배 품종별 재배농가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2010(A)		2015(B)		증 감(B-A)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합 계		22,589	100%	15,229	100%	△ 7,360	100%
조생종	소 계	988	4.4%	604	4.0%	△ 384	5.2%
	원 황	951	4.2%	571	3.7%	△ 380	5.2%
	한아름	17	0.1%	11	0.1%	△ 6	0.1%
	진 황	12	0.1%	12	0.1%	0	-
	녹 수	8	0.0%	10	0.1%	2	0.03%
중생종	소 계	20,798	92.1%	14,012	92.0%	△ 6,786	92.2%
	신 고	20,001	88.5%	13,463	88.4%	△ 6,538	88.8%
	황금배	302	1.3%	214	1.4%	△ 88	1.2%
	화 산	266	1.2%	204	1.3%	△ 62	0.8%
	금촌조생	101	0.4%	53	0.3%	△ 48	0.7%
	장십량	93	0.4%	40	0.3%	△ 53	0.7%
	만풍배	35	0.2%	38	0.2%	3	0.04%
만생종	소 계	365	1.6%	279	1.8%	△ 86	1.2%
	감천배	337	1.5%	259	1.7%	△ 78	1.1%
	추황배	28	0.1%	20	0.1%	△ 8	0.1%
기 타		438	1.9%	334	2.2%	△ 104	1.4%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배 재배농가의 주된 재배 품종 현황 2010, 2015

- 2016년 시도별 배 생산량은 전남이 69.1천톤으로 최대 생산량을 보였고, 다음으로 충남 51.2천톤, 경기 46.1천톤, 경북 23.7천톤 등의 순임
- 배의 시도별 주산지는 전남은 나주·영암, 충남은 천안·안산·연기·예산, 경기는 평택·남양주·안성, 경북은 김천·상주, 경남은 진주, 충북은 영동 등임
- 국내 배의 최대 산지는 전남 나주이며, 다음으로 충남 천안, 경기 안성, 경북 상주, 경남 진주, 충남 아산, 경기 평택, 전남 영암 등의 순임

<시도별 배 생산현황>

(단위 : ha,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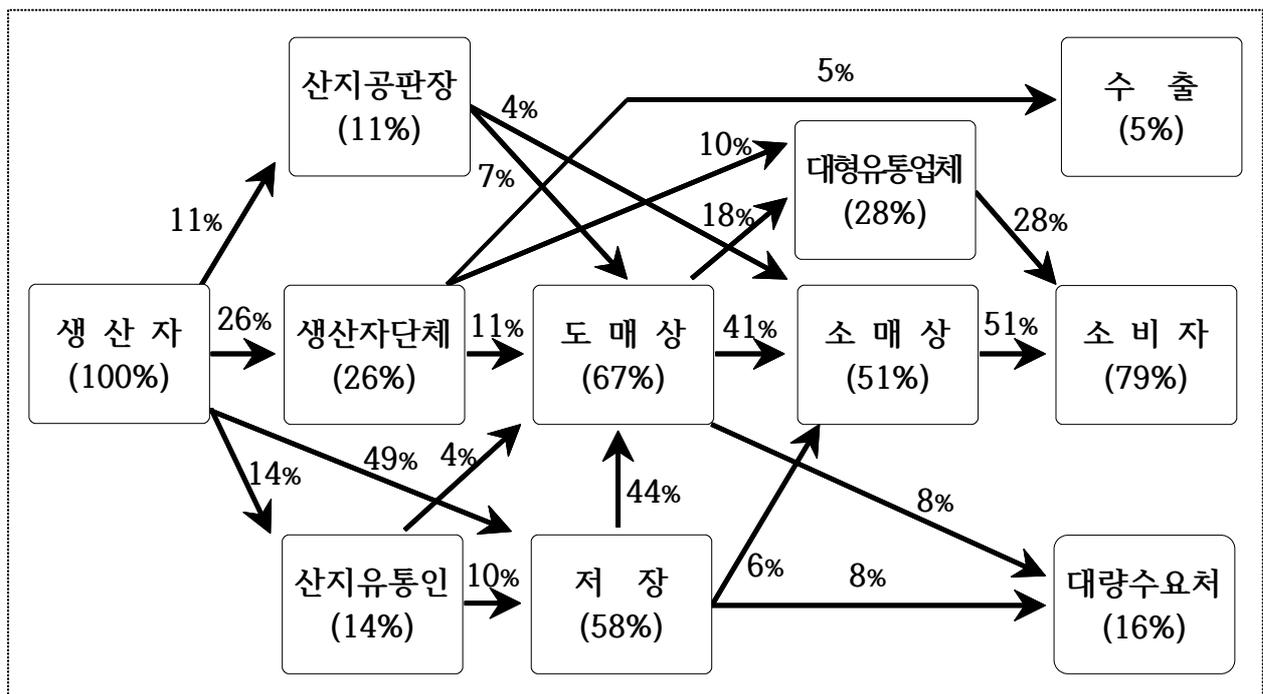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면적	생산량								
합 계	14,353	172,599	13,740	282,212	13,127	302,731	12,664	260,975	11,164	238,014
서울	24	375	24	426	24	461	24	497	14	311
부산	22	137	11	76	18	318	12	176	44	675
대구	10	90	10	82	8	65	3	38	23	202
인천	221	448	205	970	179	924	164	1,498	157	1,784
광주	43	235	41	509	49	580	43	564	41	705
대전	75	828	67	969	67	946	73	1,235	137	2,459
울산	656	7,598	648	9,874	595	14,605	567	5,270	555	5,272
세종	-	-	-	-	-	-	-	-	150	3,061
경기	2,911	45,750	2,703	47,452	2,577	49,905	2,426	48,384	2,248	46,144
강원	164	1,781	132	2,062	137	1,553	134	1,919	159	2,320
충북	575	11,228	531	11,803	526	11,647	502	10,034	412	7,597
충남	2,542	30,558	2,382	58,802	2,389	58,354	2,334	55,898	2,094	51,179
전북	645	7,896	633	13,048	617	16,966	618	12,916	681	15,446
전남	3,638	26,801	3,602	87,893	3,457	94,913	3,499	85,980	2,499	69,119
경북	1,789	30,309	1,748	33,387	1,536	30,859	1,422	24,800	1,309	23,664
경남	1,030	8,511	996	14,682	935	20,268	835	11,562	641	8,077
제주	8	53	7	176	13	367	8	203	-	-

* 자료 : 통계청, 과실생산량

2. 유통현황

- 배의 유통경로는 생산물량의 약 49%는 홍수출하 방지 등을 위해 저온저장고에 보관되고, 나머지 물량은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산지공판장을 거쳐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판매되고 있음
- 생산자 단체는 산지 생산물량의 26%를 취급하고, 주요 판매처는 수출,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임
- 산지공판장은 산지 생산물량의 11%를 취급하고, 주요 판매처는 수출, 도매시장 등임
- 산지유통인은 포전거래 등을 통해 생산 물량을 확보하여 약 10% 정도는 산지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물량은 도매시장 등에 판매 함
- 저장된 물량은 소비지의 배 수급·가격 상황에 따라 도매시장, 대량수요처, 소매상 등으로 판매되고 있음

〈배 유통단계 및 생산물량 소비 현황〉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 2016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3. 가공현황

- 배의 생산물량 중 가공에 사용되는 물량은 2015년 10,131톤으로 배 생산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 배는 주스, 음료, 넥타, 즙청, 잼, 건조배 등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배 생산물량에서 가공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년 2%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은 주스 가공물량이 증가하며 3.9%로 증가함
- 배 가공식품 중 주스는 가공비중이 2010년 11.8%에서 2015년 43.7%로 31.9%p 증가하고, 음료도 5.3%에서 28.3%로 22.9% 증가한 반면, 즙청, 잼은 감소하였으나, 넥타는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증가세로 전환됨

〈배 가공식품별 배 사용량 현황〉

(단위 : 톤)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생산물량(A)	307,820	290,494	172,599	282,212	302,731	260,975
○ 가공물량(B)	8,038	7,504	14,228	7,561	6,028	10,131
- 주 스	949	2,433	5,532	2,728	2,375	4,425
- 음 료	430	2,548	3,736	2,470	147	2,864
- 넥 타	2,487	1,809	2,786	1,380	1,652	2,369
- 즙 청	3,181	324	1,728	298	623	209
- 잼	304	156	122	195	194	120
- 건 조	-	-	-	-	-	76
- 분말차	-	-	-	-	-	41
- 조 미	-	6	2	-	1	12
- 기 타	684	225	308	488	1,028	9
- 술	3	2	14	2	8	7
○ 비 율(B/A)	2.6%	2.6%	8.2%	2.7%	2.0%	3.9%

*자료 : 통계청, 과실생산량, 과실류 가공현황

4. 소비현황

- 배 소비량은 2010년 287.4천 톤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210.1천 톤이 소비되어 2010년 대비 77.3천(26.9%)이 감소 됨

- 배의 주요 소비는 추석, 설 명절의 선물용, 제수용과 배 음료, 배 즙 등의 가공용, 수출, 식당 등의 디저트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연도별 신선 배 소비 물량>

(단위 : 톤)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생산량(A)	307,820	290,494	172,599	282,212	302,731	260,975	238,014
소비량(B)	287,413	274,654	155,620	262,231	279,109	239,771	210,109
수출량(C)	23,048	17,988	15,677	20,120	23,096	22,643	25,607
과부족(D)	△ 2,641	△ 2,148	1,302	△ 139	526	△ 1,439	2,298

- * 자료 : 통계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입 Data
- * 주₁. 소비량(B) : “1인당 연간 배 소비량 × 인구 수” 로 산정
- * 주₂. 과부족(D) = 생산량(A) - 소비량(B) - 수출량(C, 가공제외)

- 1인당 배 소비량은 매년 늘어나며 2008년 9.2kg까지 증가한 이후, FTA 체결에 따른 해외 과실류의 수입 증가로 인해 배 대체 품목으로 소비가 전환되면서 2016년 배 소비량은 4.1kg으로 2008년 대비 5.1kg(55.4%)이나 크게 감소함

<1인당 연간 배 소비량>

(단위 : kg)

구 분	'80	'85	'90	'95	'00	'05	'08	'10	'11	'12	'13	'14	'15	'16
소비량	1.5	3.1	3.6	3.9	6.7	8.6	9.2	5.8	5.5	3.1	5.2	5.5	4.7	4.1

- * 주 : 1인당소비량(조식기준) = (생산량+수입량-수출량) ÷ 인구수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 KREI, 2016년 배 소비량 추정치

<연도별 신선 배 도매가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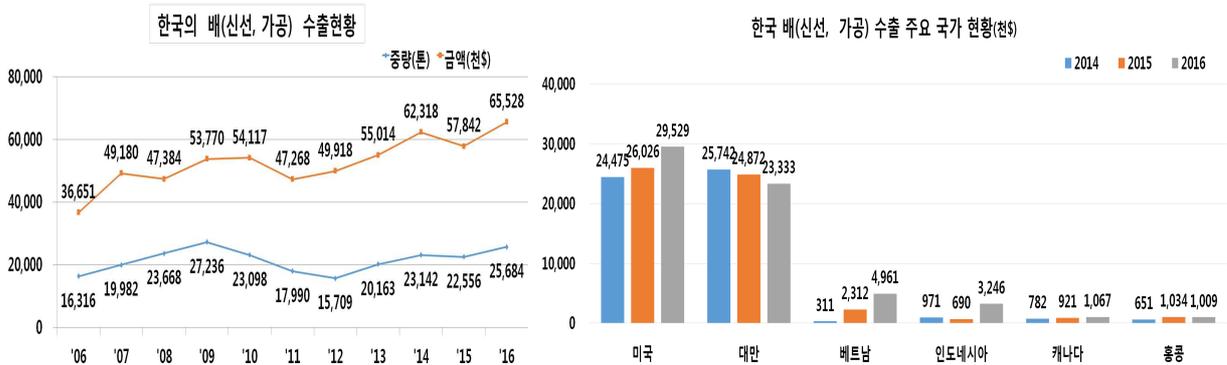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3,107	3,139	2,982	3,008	3,299	3,961	5,349	5,200	2,589	1,893	2,015	2,253	3,241
2015	2,345	2,413	2,606	2,687	2,727	2,676	2,640	2,370	2,463	2,641	2,731	2,907	2,605
2016	2,945	3,053	2,964	2,933	2,952	3,017	3,356	3,678	3,082	2,404	2,383	2,531	2,942

- *자료 : 농수산물유통정보 (www.kamis.or.kr) / 1kg당 도매가격(상품)기준

5. 수출현황

- (배 :신선, 가공) 2006년 36,651천\$의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6년에 65,528천\$이 수출되어 10년 만에 약 28,877천\$(78.8%)이 증가 함
 - 2016년 배 수출에서 신선 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9.7%(65,356천\$), 가공 배는0.3%(172천\$)로 배 수출의 대부분을 신선 배가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홍콩 등이며, 2016년 수출은 상위 6개 국가가 총 배 수출의 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캐나다의 수출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수출액('16)은 미국 29,529천\$(45.0%), 대만 23,333천\$(35.6%), 베트남 4,961천\$(7.6%), 인도네시아 3,246천\$(5.0%), 캐나다 1,067천\$(1.6%) 등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 Data

- (신선 배) 2006년 36,623천\$의 수출을 높이기 위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시장다변화 노력 등을 추진한 결과 2016년에 65,356천\$을 수출함으로써 10년 만에 28,733천\$(78.5%)이 신장되는 성과를 거둠
 - 2016년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홍콩, 호주 등이며, 수출 상위 6개 국가가 신선 배 수출의 96.4%를 차지 함
 - 신선 배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관측을 통해 수출이 크게 증가한 국가로는 대만,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등 임

- 대만은 2010년 36.5천\$에서 2016년 4,960.6천\$로 135.9배 증가, 베트남은 2010년 661.2천\$ 에서 2016년 3,245.7천\$로 4.9배 증가, 호주도 2010년 45.7천\$에서 391.4천\$로 8.6배 증가, 말레이시아는 51.3천\$에서 2016년 107.8천\$로 2.1배 증가하였음.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 Data

<수출 신선 배의 내·외 포장 형태>



- 주요 수출 배 품종으로는 신고, 원황, 황금배, 화산배 등이 있으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신고가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신고는 식미와 저장력이 뛰어나며, 원황은 조생종(8월 수확)으로 가정 먼저 수출이 가능하지만 생산량이 적고, 황금배는 생산량 감소에도 대형과로 해외에서 신고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화산배는 생산량은 적지만 당도가 높아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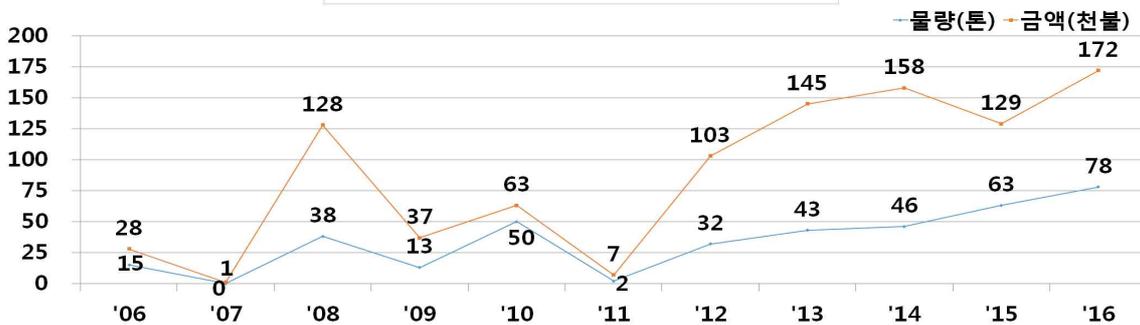
<수출용 주요 배 품종>



* 자료 : 농촌진흥청

- (배 가공품) 2006년 28천\$ 이었으나 배 즙 등의 수출품목 개발 등을 통해 2016년에는 172천\$을 수출하여 10년 만에 수출이 109천\$(173.0%) 증가
- 2016년 배 가공품 주요 수출 국가는 괌, 미국, 홍콩, AEU 등 이며, 괌 수출이 전체 수출의 61.5%(105.7천\$)를 차지하고, 미국이 26.8%(46.1천\$), 홍콩이 10.1(17.4천\$)%, AEU가 1.5%(2.6천\$)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배 가공 식품 수출 현황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 Data

- 수출 확대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배즙 개발 및 수출용 가공품 개별포장 및 외 포장 디자인 등의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 배 음료 및 포장·용기 형태>



- (배 수출단지 운영) 정부는 대만에 배 수출확대를 위해 전국에 배 수출단지를 운영하고 있음
- 2016년 정부는 대만 수출 배 전문단지를 전국 75개소에 2,758ha를 지정하고, 약 2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음

대만 수출 배 수출단지 현황(2016)

지역	선과장명	참여 농가	재배면적 (Ha)	소재지
세종	금강배영농조합법인	41	32.7	부강면 금호리 163
인천	하나로남동배영농법인	13	14.5	남동구 수산동 310-5
	강화섬해풍배	18	10.2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381
울산	울산원예농협 선과장	21	32.7	울주군 청량면 율리 98-3
경기	남양주먹골배선과장	76	93.0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595-12
	양주배영농조합	39	67.0	양주시 봉양동 610-2
	신김포농협	30	35.8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63
	안성과수농협 농산물유통센터	15	21.4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188-1
	농사단 원천영농조합	10	23.2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488
	경기동부과수농협 장호원유통센터	17	12.8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2-1
	장호원농협 청과물 산지유통센터	22	23.1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176-10
	평택과수농협물류센터(신궁리)	18	26.0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140
	평택과수농협물류센터(평궁리)	18	26.0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336-1
	삼우농원	5	15.0	평택시 칠원동 16-5
	이화회과수영농조합	13	21.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181-16
	수원지구원예농협	25	26.0	화성시 팔탄면 을암리 430-14
	화성시배수출협의회	24	35.0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381-1
	이광회 선과장	9	35.0	평택시 청룡동 109
	농업회사법인 드림 주식회사	7	15.0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508-1
	충북	보은황토배영농조합법인	30	19.0
청원과수영농조합		20	16.0	청원군 북이면 내서로 796-105
진천과수영농조합		15	14.0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384
삼성농협수출배작목반		13	27.0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294-4
회인골배작목회		21	7.0	보은군 회인면 늘곡리 289-1
충남	음봉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30	72.4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55-5
	천안배 수출선과장(1)	40	78.8	천안시 성환읍 을금리 749
	(주)태봉	17	17.6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111-6
	아산배 수출선과장	110	119.9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343
	안양골 배	17	40.5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182-3
	송덕농산 영농조합법인	11	42.5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59-15
	배마을영농조합법인	10	26.0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399
	정산농협 장평지점	15	10.9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396-1
	조치원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27	22.6	연기군 조치원 읍오봉리 38
	농심배 수출선과장	16	54.5	천안시 성환읍 성환읍 91-1
	하나배 영농조합법인	9	35.4	천안시 성환읍 왕림리 358
	조은팜영농조합법인	17	21.8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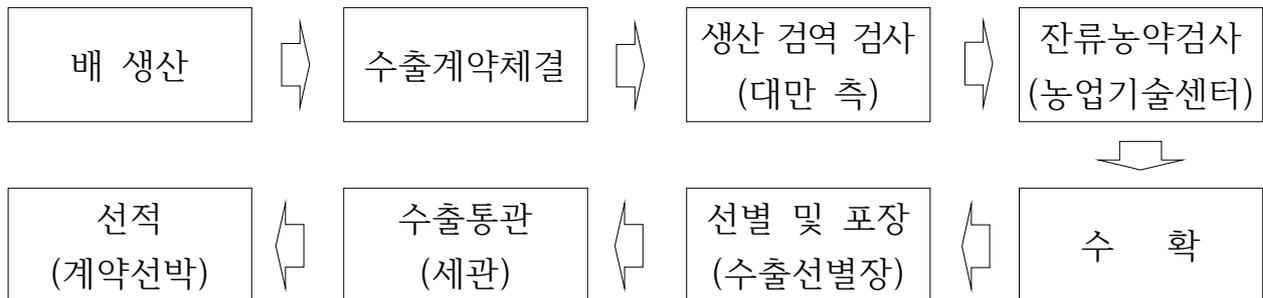
지역	선과장명	참여 농가	재배면적 (Ha)	소재지
충남	공주원예농협 산지 유통센터	5	4.0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3-1
	성환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64	168.5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184-8
	나무영농조합법인	71	78.5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8-1
	향기농원2선과장	9	21.6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226-75
	논산배수출영농조합법인	31	43.2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2-12
	영농조합법인 한성	12	39.3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279-1
	논산계룡농협산지유통	9	8.3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467
	한아름	7	15.5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1049
	(주)이레 농업회사법인	11	14.8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108-1
	H썬파머스	4	8.1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무길 34-156
	천안 배 수출선과장(3)	40	78.7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울금리 11-1
	전북	정일과수영농조합	12	22.0
고창배영농조합		45	91.7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5
김제지평선배영농조합		56	67.0	김제시 금성로 222
익산원예농협산지 유통센터		65	84.0	익산시 변영로 1길 20
전주농협유통센터		28	43.7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212
전주으뜸배영농조합		14	36.6	전주시 덕진구 초포로 196-3
남원원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38	38.6	남원시 아랫정재길 7-14
완주과수배영농조합		19	32.4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675-1
전남	북전주농협	77	117.1	전주시 덕진구 변영로 200
	덕산나주배영농조합 선과장	8	18.8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557-4
	나주배유통센터2	24	11.0	나주시 봉황로 110-8
	나주배유통센터1	24	11.7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
	나주시농산물유통센터	17	29.6	나주시 왕곡면 영산포로 22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3	5.8	곡성군 목사동면 주목로 364-8
	순천연합조합공동 사업법인	26	26.4	순천시 승주읍 중대길 15
경북	구례군농협연합사업단	8	15.4	구례군 광의면 케이비에스중계소로 123
	금호농협산지유통시설	28	17.7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 74
	농산물산지집하장	25	15.6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58-1
	현곡배수출선과장	102	47.3	경주시 현곡면 소현길 99
	상주원예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51	42.2	상주시 헌신동 219-1
	동안동농업협동조합 임동	8	8.9	안동시 임동면 챗거리길 11
	상주꿀배사벌영농조합	88	89.0	상주시 사벌면 용담리 519-4
	연봉수출선과장	186	91.0	상주시 외서면 북상주로 817
	참배수출단지농업회사 법인(주)	41	13.0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681-6
경남	군위 황금배 수출 영농조합법인	20	11.4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90-5
	진주원예농협 문산유통센터	29	57.8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339
	하동농협 선과장	52	33.6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29
	함양군수출영농조합법인	11	6.9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318-1
	75개	2,207	2,758.0	

III. 수출 배 통관 절차

1. 수출준비

- 대만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수출신용장이 접수(L/C 수출의 경우) 되면, 수출이행을 위한 검역, 포장, 운송, 통관 등 전반사항을 진행

〈수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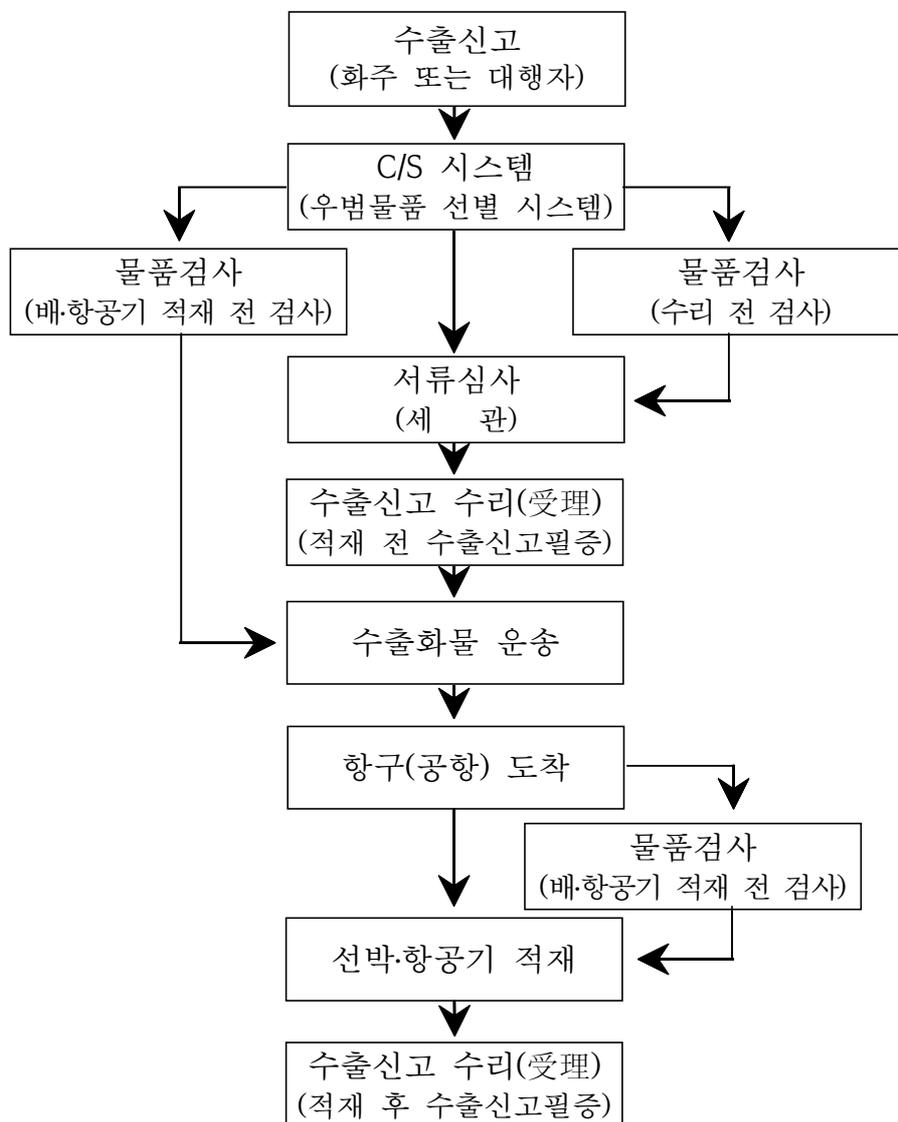


- ① 수출계약의 체결 : 시장조사 후 가격 등 협상과정을 통해 계약 체결
* L/C 수출은 수출계약 체결이후 바이어가 개설한 신용장을 통지은행을 통해 입수
- ② 잔류농약 등 검사 : 대만 측 검역관의 생산농장 현지 검사 및 한국 농업기술센터의 농약 등 검사(약 일주일 소요)
- ③ 선별 및 포장 : 대만 배 수출단지의 전용 선별장에서 선별 포장
- ④ 운송(육상·해상) 및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 해상운송은 선적할 선박을 수배하여 해상운송 체결 및 CIF, CIP 조건의 경우 해상보험 계약체결
- ⑤ 수출통관 : 해당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받음
- 제출서류 : 수출신고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 ⑥ 수출선적 : 수출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사전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에 적재한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 수령
- ⑦ 수출대금의 회수 : 수출신고필증과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를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

2. 통관절차

- 수출통관은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의 물품이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대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지를 사전 확인하는 절차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 관련 법규로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 물품의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관세법, 수출대금의 결제방법 등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등이 있음

<수출통관 절차도>



-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수리(허가)를 받아 수출화물을 운송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 하여야 함
- (수출신고) 수출물품의 소유자(화주)나 수출입통관 전문 국가공인자격인(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관세청에서 정한 “수출신고서” 양식에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관세청에 전송(신고)하면 됨

☞ 관세청의 “수출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98.6.1 ~ 현재)

- ▶ 목 적 : 관세청 통관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PC등을 갖추지 못한 영세무역업자가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 설치장소 : 무역협회 본부 및 11개 지부 / 전국 5개의 주요세관
- ▶ 이용료 : 2,500원(수출신고 건당)

- (수출신고서 작성) 송품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며, 수출품은 신고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함
- 수출품과 관련된 품목·규격 란은 품목번호 또는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으로 구분하여 작성(기재)
- 모델·규격 란은 모델·규격별로 모델·규격, 성분, 수량, 단가, 금액을 최대 50행까지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 50행 초과시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함. 품목이 많아 신고서가 1매를 초과할 때에는 신고서 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을지 신고서 상단우측에 “을지” 하고 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수출신고 서류의 정정

- ▶ (신고번호 부여 전) 관세청에서 전산오류 내용을 통보 한 경우 또는 신고 내용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된 신고 자료를 처음 제출번호로 재 전송
- ▶ (신고번호 부여 후)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신청인 소재지) 세관에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 효력발생 시점은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임

- 수출신고서의 처리(수리) 방법은 신고 사안에 따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의한 자동수리,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후 수리 및 검사 후 수리로 구분 됨
 - (심사 후 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수출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하는 방법
 - (검사 후 수리) 수출시 현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우범물품으로 분류된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한 후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
 - 수출신고필증은 2번(적재전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 발행 됨
 - 적재전 수출신고필증 : 수출화물 적재지(선별장/창고 등) 검사 후 발행.
 -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박(항공기)에 화물이 적재 되어야 하고, 적재기간에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야 됨
 -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 : 수출화물이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후 발행
- ※ 교부된 신고필증의 내용이 관세청통관시스템의 보관 전자문서와 상이한 경우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함.

IV. 대만의 배 시장 현황

1. 대만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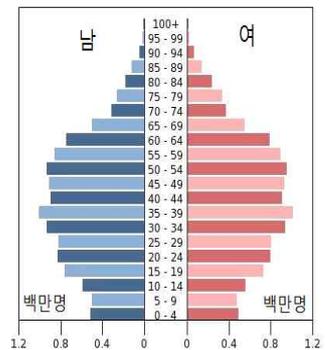
- 정부형태 : 입헌민주공화국(입법부 : 단원제) * 공식국호 : 중화민국(中華民國)
 - 행정조직 : 5개 시정부, 18개 현 정부
- 면적 : 35,980km²
 - * 육지 : 32,260km² / 해양 : 3,720km² / 해안선 : 566.3km
- 민족구성 : 대만인 84%, 중국인 14%, 토착인 2%
- 언어 : 중국 마다린어(사무용), 대만어 등
- 종교 : 불교·도교혼합 93%, 기독교 4.5%, 기타 2.5%
- GDP('15) : 10,990억\$ ('13 : 10,500억\$ → '14 : 10,910억\$)
 - 산업별 GDP 구성비('15) : (농업) 1.8%, (공업) 36.5%, (서비스) 61.7%
 - GDP 성장률 : ('14) 4.0% → ('15) 0.7% → ('16) 1.5%
 - 1인당 GDP(PPP) : ('13) 44,900\$ → ('14) 44,600\$ → ('15) 46,800\$
- 무역수지('15) : 5,984억\$ (수입 : 2,629\$, 수출 : 3,355억\$)
- 인구 : 23,464,787명 (인구 성장률 : 0.2%. 2016 기준)



<대만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비율	인구	남자	여자
합계	100%	23,464,787	11,652,738	11,812,049
0 ~ 14세	13.1%	3,082,098	1,588,679	1,493,419
15 ~ 24세	13.2%	3,090,226	1,585,222	1,505,004
25 ~ 54세	46.7%	10,968,275	5,477,446	5,490,829
55 ~ 64세	13.9%	3,258,378	1,593,024	1,665,354
65세 이상	13.1%	3,065,810	1,408,367	1,657,443



* 자료 :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5

- 환율(TWD/US\$) : ('13) 30.36 → ('14) 30.36 → ('15) 31.76 → ('16) 32.23
- 인터넷 사용자('15) : 20.6백만명(총 인구의 88%)

2. 대만의 배 생산, 유통 및 소비 현황

가. 생산 현황

- (농업 생산 면적) 대만의 국토 면적은 36,000km²(3,600천ha)로 한국의 1/3정도이며, 이중 농업생산을 위한 경지면적은 2015년 796.6천ha로 22.1%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화 등으로 매년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 경지면적은 2005년 833.2천ha에서 2015년에는 796.6천ha로 36.6천ha(4.4%)가 감소하였으며, 생산면적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농산물은 수입에 의존 함

<대만의 농산물 생산 경지면적 현황>

구 분	2005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면 적(ha)	833,176	822,364	808,294	802,876	799,830	799,611	796,618
경 지 율	23.1%	22.8%	22.4%	22.3%	22.2%	22.2%	22.1%

*자료 : 臺灣 行政院農業委員會. 耕地面積

- (배 생산) 대만은 아열대 지역으로 온대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의 생산이 어려워 품종개량 등을 통해 중부지역의 고지대 등을 활용해 배를 생산하고 있으나 전체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 (생산면적 · 생산량) 2015년 대만의 배 생산면적은 5,465ha, 생산량은 127천톤이며,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만의 배 생산 면적 및 물량>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식부면적(ha)	7,055	6,587	5,889	5,786	5,575	5,465
수확면적(ha)	7,024	6,555	5,854	5,770	5,562	5,454
생산량(kg)/ha	24,895	22,885	23,559	18,908	24,192	23,289
생산량(톤)	174,858	150,013	137,911	109,105	134,549	127,016

*자료 : 臺灣 行政院農業委員會, 104年 農業統計年報

- (재배 품종) 대만의 배 품종은 저지대(해발 800미터 이하)에서 재배되는 횡산리(橫山梨, Heng-shan), 중부의 이산(梨山) 등과 같은 고산지대(해발

1,500m ~ 2,000m)에서 재배되는 온대리(溫帶梨), 그리고 자체적으로 배 접목기술을 개발해 생산되고 있는 고접리(高接梨)로 구분할 수 있음

횡산리(橫山, Heng-shan)는 중국 화남지역에서 유입되어 대만에서 유일하게 재배되었던 돌배로 해발 800미터 이하의 저지대에서 재배되고, 육질이 거칠어 식용으로 다소 부적합

온대리(溫帶梨)는 겨울철 평균기온이 12~16℃인 아열대지역의 대만에서는 온대 과일인 배의 꽃눈이 형성되지 않아, 고산지대를 활용해 횡산리(橫山梨)에 일본에서 수입한 20세기와 신고, 한국에서 수입한 황금배의 꽃눈 가지를 매년 1월경에 접목시켜 5월에서 9월까지 생산되는 배(梨). 주요 생산 품종으로는 20세기배(20世紀梨), 신세기배(新世紀梨), 풍수배(豐水梨), 신흥배(新興梨), 행수배(幸水梨) 등이 있음

고접리(高接梨)는 대만이 개발한 가지접목 기술을 활용해 횡산리를 모수(母樹)로 하여 1~2월에 생산되는 배(梨). 1975년 횡산리에 신세기(New Century) 품종을 접목시켜 해발 800미터 이하 지점에서도 재배 가능한 품종인 지지에 배(JiJye Pear)를 개발한 이후 민푸리(MinFu Pear), 밀리, 설리 등의 품종이 개발되고 있으며, 온대리보다도 품질이 좋고 생산원가도 저렴하여 대중화되고 있음.

<대만의 배 생산 주요 품종>

			
신세기(新世紀梨)	신흥(新興梨)	풍수(豐水梨)	행수(幸水梨)
▷ 당도 : 10~11Brix ▷ 생산 : 5월 하순 ~ 6월 초순 *고산지 : 8월 하순 ~ 9월 하순	▷ 당도 : 10~13Brix ▷ 생산 : 7월 초순 ~ 6월 중순 *고산지 : 9월 중·하순	▷ 당도 : 10.5~13Brix ▷ 생산 : 6월 초순 ~ 7월 초순 *고산지 : 8월 하순 ~ 9월 초순	▷ 당도 : 11~13Brix ▷ 생산 : 5월 하순 ~ 6월 하순 *고산지 : 8월 하순

*자료 : 臺灣水果交易資訊網

- (배 생산지역) 주요 생산지역은 대중시(臺中市),苗栗현(苗栗縣), 신죽현(新竹縣), 가의현(嘉義縣), 의란현(宜蘭縣) 등이며, 수확 시기는 5월부터 8월까지이며, 대만에서 배를 즐길 수 있는 적기는 여름임. 고산지역 생산 배의 주 출하시기는 전기 출하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이며, 후기는 7월 초순부터 8월 초순으로 10월까지도 출하가 이어짐

<대만의 배 생산 현황(2015)>

구 분	식부면적 (ha)	수확면적 (ha)	단위당 생산량(kg)	생산량 (톤)
대중시(臺中市, Taichung City)	3,594	3,593	22,857	82,133
苗栗현(苗栗縣, Miaoli County)	1,327	1,327	27,791	36,870
신죽현(新竹縣, Hsinchu County)	184	184	16,730	3,080
가의현(嘉義縣, Chiayi County)	86	86	20,654	1,781
의란현(宜蘭縣, Yilan County)	69	64	17,611	1,118
창화현(彰化縣, Changhua County)	53	53	10,351	548
남투현(南投縣, Nantou County)	48	48	10,283	493
대동현(臺東縣, Taitung County)	25	25	10,852	276
화련현(花蓮縣, Hualien County)	27	26	8,358	216
고웅시(高雄市, Kaohsiung City)	20	20	10,197	201
신북시(新北市, New Taipei City)	11	11	12,483	136
도원시(桃園市, Taoyuan City)	11	8	8,844	69
운림현(雲林縣, Yunlin County)	3	3	10,694	36
대남시(臺南市, Tainan City)	3	3	9,023	29
병동현(屏東縣, Pingtung County)	2	2	9,219	18
신죽시(新竹市, Hsinchu City)	1	1	12,897	13

*자료 : 臺灣 行政院農業委員會, 104年農業統計年報

(배 산지가격) 소비지의 배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지가격도 매년 상승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만의 배 품종별 kg당 산지 가격을 2007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신세기배(新世紀梨)는 62.8NT\$(TWD, 元)에서 67.6NT\$로 4.8NT\$ (7.6%)가 상승한 반면, 풍수배(豐水梨)는 48.0NT\$에서 78.1 NT\$로 30.1NT\$(62.7%)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신흥배(新興梨)도 42.9NT\$ 에서 69.1NT\$로 26.2NT\$(61.1%) 크게 상승함.

- 대만의 배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도 매년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만의 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체 공급물량은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부족한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대만 배의 주요 품종별 산지 가격>

(단위 : NT\$/kg)

구 분	橫山梨 Pears(Native)	新世紀梨 Pears(Hosui)	豐水梨 Pears(Sinseiki)	新興梨 Pears(Shinko)
2007	19.5	62.8	48.0	42.9
2008	27.8	59.5	46.5	41.8
2009	33.6	45.2	38.2	40.8
2010	21.1	47.2	38.6	39.2
2011	24.7	40.2	50.5	34.6
2012	35.0	57.9	98.4	46.8
2013	27.2	57.8	87.9	44.6
2014	28.3	51.8	98.8	42.9
2015	38.3	54.7	68.4	43.2
2016	-	67.6	78.1	69.1

*자료 : 臺灣 行政院農業委員會農糧署, 主要水果農場價格

나. 대만의 농산물 유통현황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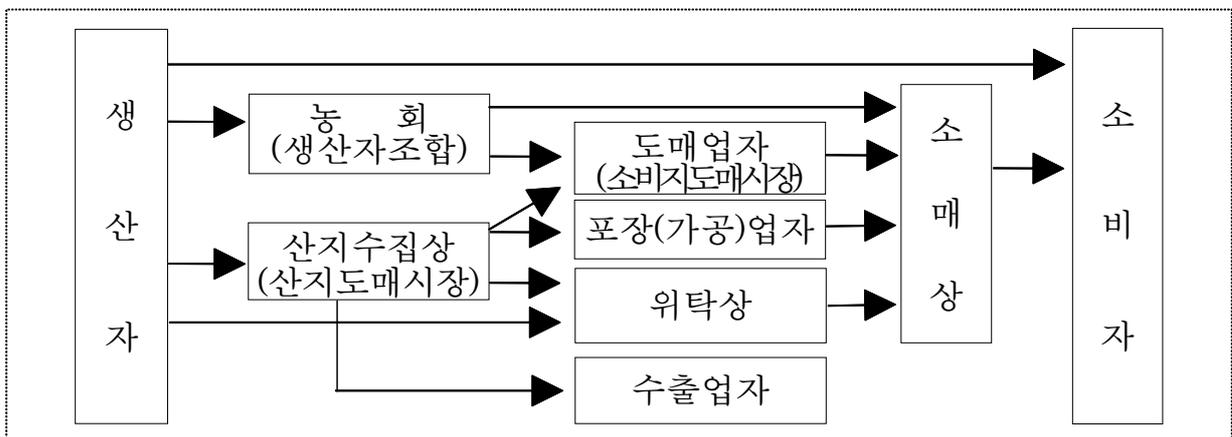
- 대만의 농산물 유통경로는 정부가 취급하는 곡물, 담배, 사탕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 상인과 생산자 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 과일류 유통주체는 생산자(수입자), 생산자조합, 산지수집상, 도매업자, 포장(가공)업자, 위탁상, 소매상, 정부기관이 있음
 - (생산자) 일부 농산물 소매기능을 담당하고 공동출하가 늘어나고 있음
 - (농회, 農會=우리나라의 농협) 수집, 출하, 수출입 기능을 담당함
 - (산지수집상)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하여 소비시장으로 출하
- * 산지수집시장 : 지방정부가 개설 운영, 정부와 조합의 공동 운영 또는 조합이 운영하는 형태

- (위탁상) 생산자·수집상으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 및 수수료 징수
- (도매업자) 산지수집상, 농회, 생산자조합, 도매상으로부터 물량을 받아 소매상, 전문 도매상, 수출업자, 가공업자 등에 판매
- (소매상)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 수입 한국 농산물 유통

- 부산항(광양항, 평택항)에서 대만까지 수출 농산물의 운송기간은 보통 3~4일 소요되며, 화물운반은 대부분 40피트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음
- 수입업체들은 자체의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 신선편의식품 상품화 작업(Fresh-cut)을 하는 수입업체는 별도의 작업장 및 시설도 소유
- 한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통관 즉시 대부분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까르푸, RT Mart 등)로 바로 배분 됨
 -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게 대만 내 납품업체, 품질조건 등을 맞추어 주문(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이 도착되면 유통업체 등에게 바로 전달 가능
 - 수입업체의 주문 물품의 유통업체별 특성을 보면
 - 대형유통업체용(RT Mart 등) : 소과 위주, 직접 분배
 - 도매시장 용 : 대과 위주, 경매를 통해 상인에게 판매

<대만의 청과물 유통경로>



*자료 : aT, 대만의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2006), KREI 과실류 대만 수출여건 개선발굴 조사(2010)

- 대만 배 시장은 서양배(미국, 뉴질랜드, 칠레 등)와 동양배(한국, 일본)로 구분됨
 - (서양배) 낮은 가격·물량으로 2015년 까지 대만 수입 배 시장의 약 99%를 점유하였으나, 2016년부터 동양배 수입이 재개되면서 시장점유비율이 26.7% (뉴질랜드 13.0%, 미국 12.9%, 칠레 0.8%)로 크게 하락(*칠레는 2016년 처음 수입)
 - (동양배) 2015년까지의 대만 배 수입물량의 약 1% 수준이었으나, 품질 등을 인정받으며 2016년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수입배 시장의 73.3%(한국 63.6%, 일본 9.7%)를 차지
 - * 동양배는 8월~익년 6월까지 수입되어 주로 춘절 등에 고가의 선물용으로 판매됨
 - * 중국 배는 식물검역 상 수입제한품목으로 묶여 당분간 수입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대만의 배 수입은 대만산 배의 출하성수기 중 7월을 제외하고 연중 수입이 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칠레 등임
 - 한국산·일본산은 7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수입되고 있으며, 동양배 쿼터량 수입기간이 1~9월로 인해 동양배 주요 생산시기인 9월의 수입량 가장 많음
 - 미국산은 대만산 성출하기인 7~9월을 제외하고 매월 저가로 풍부한 물량이 수입되고 있어,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편임

<대만의 배 품종별 생산 및 월별 배 수입 시기>

구 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 입	한 국	신고 배 등														
	일 본	20세기 배 등														
	미 국	서양배														
	뉴질랜드	서양배														
	칠 레	서양배														
생 산	설 리(雪梨)															
	풍수리(豐水梨)															
	행수리(幸水梨)															
	신흥리(新興梨)															
	횡산리(橫山梨)															
	신세기리(新世紀梨)															
	정취리(晶翠梨)															
	밀 리(密梨)															

*자료 : 臺灣 財政部 關稅總局, 農糧署 都賣 Site

(2) 도매유통(도매시장)

- 도매시장은 주로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에 의해 개설·운영되며, 품목별로 청과시장, 가축시장, 가금시장, 수산시장 등으로 구분
 - (도매시장 구분) 산지도매시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구분되며, 대북시의 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지 도매시장 임
 - (운영방식) 공영형태로 시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거래는 중도매인이 주도하며, 철저히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함,
 - (거래주체) 6가지 유형으로 농민단체 출자 법인, 농민단체와 정부가 공동 출자 법인, 농민과 상인이 공동 출자 법인, 정부기관 출자 법인,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및 상인 출자 법인 등임
 - (거래방법) 경매거래, 상대거래, 표준가 거래, 입찰거래 등 네 가지 형태가 있으나, 경매와 상대거래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 경매시스템은 70개 도매시장 중 2개 시장(소비지 도매시장)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는 상대거래 방식(산지도매시장)을 활용
- (배 거래) 도매시장에서는 대만산 배와 수입산 배를 거래하고 있으며, 2016년 배 거래물량은 28,921톤으로 전년 35,665톤 대비 6,744톤(18.9%)가 감소함
 - 대만산 거래물량은 21,181톤(73.2%) 수입산 거래물량은 7,740톤(26.8) 임

<대만 도매시장의 배 거래물량 현황>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40,176	36,335	33,467	34,720	35,665	28,921
대만산	33,756	28,055	27,646	27,418	26,942	21,181
수입산	6,420	8,280	5,821	7,302	8,723	7,740

* 자료 : 臺灣 農產品交易情報易(amis.afa.gov.tw), 產品交易價量走勢圖

- (대만산) 거래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은 21,181톤을 거래하여 2015년 26,942톤 대비 5,761톤(21.4%)이 감소

- 배의 품종별 거래비중은 신흥리(新興梨)가 도매시장 전체 거래물량 21,181톤의 52.96%를 차지하고, 추수리(秋水梨) 16.83%, 밀리(蜜梨) 8.72%, 세기리(世紀梨) 8.68%, 풍수리(豐水梨) 6.22% 등임

<대만 도매시장의 대만산 배 품종별 거래 현황>

(단위 : 元/kg, 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흥리 (新興梨)	평균가	34.3	40.9	41.4	40.9	44.5	63.9
	거래량	17,154	12,889	12,457	12,213	11,896	11,218
추수리 (秋水梨)	평균가	35.1	35.6	38.6	49.6	41.7	49.4
	거래량	3,408	4,197	4,261	4,306	5,021	3,564
밀리 (蜜梨)	평균가	35.9	40.7	42.9	40.7	46.5	57.3
	거래량	2,765	3,564	3,856	2,934	3,066	1,848
세기리 (世紀梨)	평균가	48.6	43.6	49.4	41.6	37.7	54.2
	거래량	3,306	2,547	1,513	1,827	1,933	1,839
풍수리 (豐水梨)	평균가	37.1	41.1	42.0	44.1	44.9	59.9
	거래량	4,722	2,914	4,532	4,591	3,372	1,318
행수리 (幸水梨)	평균가	40.9	44.9	38.8	49.5	48.5	59.2
	거래량	75	85	128	57	44	21
4029梨	평균가	26.1	32.5	35.6	33.1	38.7	49.4
	거래량	829	820	480	456	736	355
조리 (鳥梨)	평균가	27.8	37.1	29.2	29.5	29.8	33.6
	거래량	175	124	171	99	125	42
횡산리 (橫山梨)	평균가	18.7	20.8	18.2	20.9	23.9	27.9
	거래량	1,322	915	248	935	749	976

* 자료 : 臺灣 農產品交易情報易(amis.afa.gov.tw), 產品交易價量走勢圖

- o (수입산) 수입산 과실의 도매시장 유통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는 2013년 이후 거래물량이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6년은 7,740톤을 거래하여 2015년 8,723톤 대비 983톤(11.3%)이 감소
- 수입품의 원산지는 한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칠레 등임
 - * 배 이외에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된 사과 등 온대과일 등을 거래 하고 있으며, 거래 품목과 원산지 국가가 상당히 다양함
- 포장단위는 5kg, 15kg 등으로 골판지 상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매 시장 내에서 재포장, 소포장도 하고 있음

<대만 도매시장의 수입 배 품종별 거래 현황>

(단위 : 元/kg, 톤)

구 분 (수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설리 (雪梨)	평균가	54.7	44.9	54.0	58.3	46.3	56.9
	거래량	4,036	5,835	3,429	4,330	5,854	5,009
기타수입 (其他進口)	평균가	87.9	91.1	92.8	98.0	95.5	104.7
	거래량	2,064	2,052	2,234	2,757	2,668	2,508
서양배 (西洋梨)	평균가	65.7	50.8	58.5	47.1	53.6	55.3
	거래량	320	393	158	215	201	223

* 자료 : 臺灣 農產品交易情報易(amis.afa.gov.tw), 產品交易價量走勢圖

(3) 소매유통

- 저성장 하에서도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료품 소비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소매시장의 거래규모가 2012년 37,832NT\$백만元에서 매년 하며 2016년 40,968NT\$백만元으로 4년 만에 3,136NT\$백만元(8.28%) 증가함

<대만의 소매시장 거래규모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판매액(NT\$백만元)	37,832	38,574	40,074	40,203	40,968
연간성장율(%)	2.40	2.00	3.90	0.30	1.90

*자료 : 臺灣銀行

- 대만의 대형유통업체의 매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2,046NT\$억元으로 전년 11,510NT\$억元 대비 536NT\$억元(4.7%) 증가
- 대형유통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백화점이 27.7%, 편의점이 25.6%, 슈퍼마켓 16.4%, 대형할인매장(Outlet) 15.9% 등의 순임
- 2012년 대비 2016년의 대형유통업체별 시장점유비율을 보면, 백화점은 27.0%대가 유지되고 있으나, 편의점은 26.2%에서 25.6%로 0.6%p가 낮아 지고, 대형할인매장도 16.7%에서 15.9%로 0.8%p로 낮아진 반면, 슈퍼마켓은 14.9%에서 16.4%로 1.5%p가 증가됨

<대만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 현황>

(단위 : NT\$억)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율								
총매출액	10,227	100%	10,524	100%	11,065	100%	11,510	100%	12,046	100%
백 화 점	2,800	27.4%	2,886	27.4%	3,061	27.7%	3,189	27.7%	3,331	27.7%
슈퍼마켓	1,519	14.9%	1,587	15.1%	1,672	15.1%	1,804	15.7%	1,973	16.4%
편 의 점	2,677	26.2%	2,761	26.2%	2,892	26.1%	2,950	25.6%	3,088	25.6%
대형할인매장	1,707	16.7%	1,716	16.3%	1,758	15.9%	1,830	15.9%	1,913	15.9%
기타소매업	1,524	14.9%	1,574	15.0%	1,682	15.2%	1,737	15.1%	1,741	14.5%

*자료 : 臺灣 經濟部

- (백화점) 일본과 대만의 합작형태가 주류이며 주요 백화점으로는 新光三越, 遠東, 太平洋 SOGO 등이 있음
- (편의점) 7-Eleven, Family Mart가 주도하고 Hi-Life, OK 등이 있음
- (대형할인매장) Costco, Carrefour, RT-MART, A-Mart가 판매액기준으로 대형할인매장 시장의 9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대만의 주요 대형 소매유통업체 현황>

구 분				
2016 매출액	750억 원	600억 원	200억 원	200억 원
매장수	13	94	22	17
성장율	20%	6%	1%	0%

* 자료: aT, 2016년 대만 주요 대형유통매장 현황(2016.11월 기준)

- (슈퍼마켓) 신선식품이 전체 품목의 50%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슈퍼마켓으로는 全聯福利中心, Wellcome, Matsusei, JASONS Market 등이 있음
- 배 등 수입산 과실은 체인형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슈퍼마켓, 재래시장, 과일전문매장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한국산 배는 대만의 수입 바이어의 거래처에 따라 대형소매유통업체 및 재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 * 한국산 배는 추석을 전후로 원황 배, 10월~다음해 2월은 신고배가 주로 판매되며, 신고 배는 선물용(연말연시, 명절)으로 인기가 있음
- 배의 소매가격(12~13개/box)은 수입산이 대만산 보다 약 2.6배가 높으며, 수입산 중에서는 한국의 배가 일본 배 보다 약간 높음
 - 대만산 신세기 배(新世紀梨, 12개入)가 NT\$1,260元인 반면, 한국산은 NT\$3,730元(13개入), 일본산 이십세기(二十世紀, 12개入)는 NT\$3,230元 임
 - * 위 가격은 대만 과실류 인터넷 판매업체(阿洲水果行, 365fruit.com)의 판매가격

◆ 대만산 배는 수입산 배(동양배)에 비해 모양, 색택은 다소 떨어지나 아삭한 맛, 당도가 크게 낮지 않고, 가격도 수입 배에 비해 낮아 꾸준한 대중적 선호도가 있음

<대만의 배 소매가격 현황>

			
일본 이십세기(二十世紀) NT\$ 3,230元	한국산 NT\$ 3,730元	뉴질랜드 향리(9kg) NT\$ 2240元	미국, 서양배(12.5kg) NT\$ 1,170元
			
대만, 신세기(新世紀) NT\$ 1,260元 ¹⁾	추황배(秋黃梨) NT\$ 1500	눈배(雪梨) NT\$ 700元	대만, 냉동배(2.5kg) NT\$ 750元

*자료 : 臺灣 365fruit.com, fruit365.com. momoshop.com.tw

- 2016년 대만이 수입한 배의 국가별 비중은 한국이 63.6%, 뉴질랜드 13.0%), 미국 12.9%, 일본 9.7% 등이며, 한국과 일본 배는 포장을 통한 프리미엄 상품으로 판매되고, 뉴질랜드, 미국의 배는 중저가의 벌크 형태로 판매
- 대만의 배 유통 중 특이한 사항은 냉동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아열대 지역의 생활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 수출시 신선도 문제 등을 고려해 여름철용 냉동배 수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대만의 신선과일의 포장은 약 5kg 단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입품은 외포장은 카톤박스, 내 포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일본은 내부 깔개와 외부 그물완충제 및 종이로 과실을 포장하고, 미국은 두꺼운 재질의 카톤박스 사용, 칠레는 대용량 박스에 플라스틱 깔개 사용

(4) 소비 및 구매 행태(行態)

- 일반소비용은 대만산, 고급선물용은 고품질의 수입품을 선호하고, 춘절·중추절을 전후해 소비량이 가장 많고, 가격도 비싸며, 축제 기간에는 소비량이 평상시보다 2배가 증가함
- 배는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한국과 같이 껍질을 벗겨서 시식함
- 배 구매시는 품질, 원산지, 가격, 지명도, 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춘절·중추절에는 선물용으로 5kg(7~8개 入) 배를 선호하며, 평상시에는 15kg배를 선호함 (*15kg : 도매시장은 21~26개 入, 대형마트는 26~30개 入)
- * 선물용으로는 한국산 신고 배와 일본산 20세기 배를 선호하나, 한국산은 일본산 보다 가격이 다소 높음에도 배는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으며, 과육의 씹히는 느낌이 좋아 일본산보다 더 선호함
- 배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장소는 도매시장·재래시장이며, 다음으로 대형할인마트, 과일전문상점, 백화점의 지하마켓 순임

3. 대만의 배 수출 현황

- 대만은 배를 신선품, 가공품 형태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신선품은 연도별 수출의 진폭이 매우 큰 반면, 가공의 수출은 크게 증가되고 있음
- (신선품)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이 되고 있으나, 연도별로 배의 꽃눈 접목시기의 기온·강수량 등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수출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큼
 - 배 생산량이 2012년 137.9천 톤에서 2013년 109.1천 톤으로 28.8천톤 감소할 때의 수출량은 6.4톤 이었으나, 2014년에는 134.5천 톤이 생산되어 전년 대비 25.4천톤 증가하자 수출량이 220.5톤으로 증가함
 - 2015년에는 127.0천 톤의 배가 생산되어 전년 대비 7.5천 톤이 감소하자 수출량은 91.9톤으로 전년 대비 128.6톤이 감소함
 - 주요 수출국은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으로 2015년에는 91.9톤, 230.8천\$을 수출하였으나, 2016년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8.7톤, 31천\$를 홍콩, 싱가포르 등에 수출 함

<대만의 신선 배 수출 주요국가 현황>

(단위 : 톤, 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6.4	8.1	220.5	560.6	91.9	230.8	8.7	31.0
홍 콩	-	-	20.4	71.3	24.4	75.3	5.4	18.2
싱가포르	6.0	7.2	113.9	264.5	40.4	85.0	3.2	12.6
기타국	-	-	-	-	-	-	0.1	0.3
UAE	-	-	-	-	1.0	2.0	-	-
부루나이	0.4	0.9	1.1	4.8	0.5	1.5	-	-
중 국	-	-	32.7	113.8	10.2	26.7	-	-
인도네시아	-	-	46.6	92.4	11.8	27.9	-	-
마카오	-	-	1.7	1.8	-	-	-	-
말레이시아	-	-	4.2	12.0	3.7	12.5	-	-

* 자료 : Gloval Trade Atlas, Taiwan Export Statistics (*HS Code : 080830)

- (배 가공식품) 수출규모는 2013년까지는 매우 적었으나, 정부의 가공사업 육성정책(設立區域農產加工中心)에 따라 2015년부터 가공식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수출국은 홍콩으로 2015년 24.8천\$ 수출이 2016년 46.4천\$로 21.6천\$ (46.5%)이 증가함

〈대만의 배 가공품 수출 주요국가 현황〉

(단위 : 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0.3	0.5	1.3	0.3	24.8	46.4
홍 콩	-	-	-	-	24.8	46.4
모리셔스	-	-	-	0.2	-	-
네덜란드	-	-	1.1	-	-	-
팔라우	0.1	-	0.2	0.1	-	-
미 국	0.2	0.5	-	-	-	-

* 자료 : Gloval Trade Atlas, Taiwan Export Statistics (*HS Code : 200840)

4. 대만의 배 수입 현황

- 대만은 WTO 협정에 따라 매년 아시아 배(東方梨)에 대하여는 쿼터(quota)물량을 운영하고 있음
- 쿼터 물량은 4,000톤에서 최근 9,800톤까지 증량되었으며, 배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배정(20톤/업체 한정)하고 있음
- 2017년은 약 9,783톤의 물량을 2016.12.1.~2017.6.1. 동안 신청 받아 배정함
- * 동양배의 쿼터물량 관리기관은 대만은행(<http://www.bot.com.tw>) 임

- 대만의 배 생산량은 매년 생산면적의 감소로 줄어들고 있으며, 부족한 물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의 배 수입은 전년 대비 4.7배 증가함

- 2016년 배(신선·가공) 수입은 10,806.7톤, 18,685.7천\$로 2015년 3,849.8톤, 3,941.9천\$ 보다 6956.9톤(180.7%), 14,743.8천\$(374.0%)이 증가함
- 배 수입에서 신선 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3.7%에서 2016년에는 99.3%로 55.6%p가 증가하였으며, 가공 배(음료, 즙 등)의 비중은 56.3%에서 0.7%로 55.6%p가 감소하고 있어 신선 배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의 연도별 배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합 계	371.3	474.6	100	2,863.6	3,639.4	100	3,849.8	3,941.9	100	10,806.7	18,685.7	100
신 선	212.6	207.6	43.7	2,797.6	3,491.4	95.9	3,748.7	3,748.7	95.1	10,735.2	18,547.0	99.3
가 공	158.7	267.0	56.3	66.0	148.0	4.1	101.1	193.2	4.9	71.5	138.7	0.7

* 자료 Gloval Trade Atlas,(*신선 : HS Code 080830, 가공 : HS Code 20084)

- (신선 배) 수입은 2013년 207.6천\$의 수입이 2015년 3,748.7천\$로 2년 만에 3,541.1천\$(1,705.7%)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수입도 전년 대비 4.7배 증가하는 등 매년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수입국) 한국,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이며, 수입 비중은 한국이 63.6%(11,795.8천\$), 뉴질랜드 13.0%(2,406천\$), 미국 12.9%(2,393.7천\$), 일본 9.7%(1,801.3천\$) 등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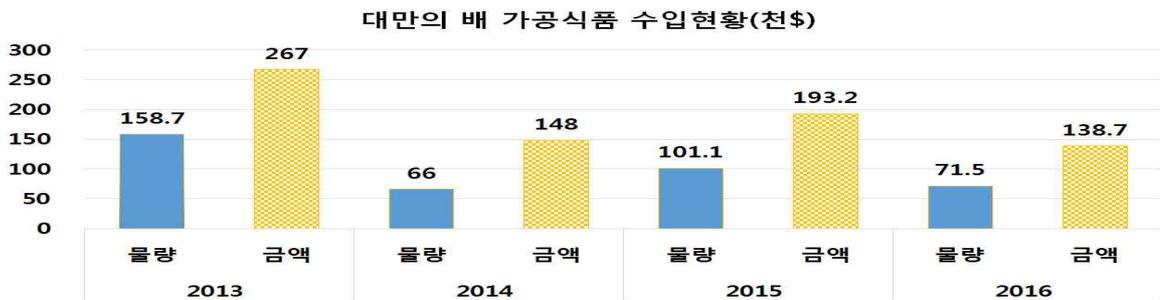
<대만의 신선 배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212.6	207.6	2,797.6	3,491.4	3,748.7	3,748.7	10,735.2	18,547.0
한 국	-	-	2.9	4.8	0.7	0.7	6,895.8	11,795.8
뉴질랜드	212.6	0.0	2,061.2	842.4	1,373.1	1,373.1	1,724.6	2,406.0
미 국	-	207.6	726.0	2,610.2	2,344.2	2,344.2	1,651.4	2,393.7
일 본	-	-	7.5	34.0	30.7	30.7	397.9	1,801.3
칠 레	-	-	-	-	-	-	65.5	150.2

* 자료 : Gloval Trade Atlas, (*HS Code : 080830)

- (배 가공식품) 대만의 가공식품 수입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입액) 2013년에 267.0천\$ 이었으나, 2015년은 193.2천\$로 2년 만에 73.8천\$이 감소되고, 2016년에도 전년 대비 54.5천\$(28.2%)이 감소한 138.7천\$을 수입하여 매년 수입이 감소되고 있음



- (주요 수입국) 스페인, 남아공,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며, 2015년 국가별 수입 비율은 스페인 68.5%(95.0천\$), 남아공 29.0%(40.2천\$), 미국 1.2%(1.6천\$), 일본 0.8%(1.1천\$), 프랑스 0.6%(0.8천\$) 등이며, 일본에서는 2016년 처음으로 수입 됨

〈대만의 배 가공식품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58.7	267.0	66.0	148.0	101.1	193.2	71.5	138.7
스페인	77.4	166.8	56.9	129.3	77.3	149.2	47.9	95.0
남아공	39.3	52.6	7.7	12.6	22.8	38.8	22.8	40.2
미 국	6.0	4.8	0.6	0.8	0.4	0.4	0.5	1.6
일 본	-	-	-	-	-	-	0.1	1.1
프랑스	-	-	0.8	4.9	0.1	0.4	0.2	0.8
이탈리아	-	-	0.1	0.3	-	-	-	0.1
벨기에	0.4	1.3	-	-	-	-	-	-
중 국	35.4	41.3	-	-	-	-	-	-
멕시코	-	-	-	-	0.6	4.4	-	-

* 자료 : Gloval Trade Atlas, (*HS Code : 200840)

☞ 참고자료 : 세계의 주요 국가의 배 수입 현황

(단위 : 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 계	358,749	437,717	391,469	328,653	322,821
1 남아공	64,350	85,146	72,855	63,662	64,572
2 아르헨티나	81,511	109,495	94,393	63,714	64,343
3 칠레	40,967	52,783	45,360	48,439	41,766
4 네덜란드	39,343	46,612	42,299	34,338	34,734
5 중국	26,626	31,217	25,458	29,448	33,525
6 이탈리아	18,062	17,509	18,241	15,654	17,329
7 미국	16,335	21,382	22,145	18,527	15,844
8 벨기에	26,467	26,783	26,034	16,884	15,363
9 포르투갈	9,167	8,055	10,684	8,484	7,060
10 스페인	11,946	11,968	10,466	7,077	6,852
11 한국	2,699	2,725	3,576	3,230	4,913
12 독일	5,241	6,020	4,133	3,363	3,259
13 프랑스	3,104	3,494	2,118	1,967	1,731
14 베라루스	0	1,235	1,432	2,212	1,589
15 호주	946	831	862	2,129	1,375
16 세르비아	290	679	704	626	1,253
17 뉴질랜드	1,054	1,380	1,657	1,326	963
18 보스니아	112	268	309	673	950
19 터키	1,136	1,429	1,279	1,140	915
20 폴란드	4,552	4,638	2,469	950	783
21 일본	213	335	332	433	656
22 체코	202	184	206	233	493
23 영국	773	475	361	345	276
24 덴마크	107	320	389	210	239
25 오스트리아	319	313	226	231	224
26 라트비아	173	189	495	274	218
27 아일랜드	255	271	214	161	198
28 그리스	159	181	198	234	186
29 아르메니아	0	0	336	236	154
30 우르과이	809	387	622	710	127
31 스웨덴	10	47	28	140	116
32 아제르바이잔	68	14	123	116	106
33 브라질	39	5	17	349	73
34 스로베니아	14	7	36	31	60
35 크로아티아	1	23	9	6	56

* 자료 : Gloval Trade Atlas, (*HS Code : 080830)

V. 대만의 수입 통관 절차

1. 개요

- 수입통관은 대만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국내반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검사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
 -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 수출입내역 신고, 세관의 신고서류심사 및 수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징수 및 수입승인 등의 절차로 진행됨
- 대만의 수입통관 업무는 재정부(財政部) 산하의 관세총국(關稅總局)이 총괄
 - 관세총국·관세국 업무 : 관세 징수, 밀수단속, 보세 및 관세 환급 관리, 무역통계, 조항설비관리업무, 타 기관 위탁 세금징수 및 관리, 수출입 자동화 시스템 구축, 항공 여객 홍·녹색선 관리(항공화물 통관유무 분리 관리) 등
 - 관세총국은 4개 직속 세관과 12개의 분국(分局) 및 지국(支局)을 세부관할 함
 - 직속세관(4개) : 지룽(基隆)·타이베이(台北)·타이중(台中)·까오슝(高雄) 관세국
 - 분국(7개) : 리우뚜, 우뚜, 화리엔, 타오위엔, 중썩, 까오슝 공항, 치엔쩐
 - 지국(5개) : 타이페이 우체국, 신주과학공업, 타이중·까오슝 가공수출, 마일리오

<대만 관세총국 직속 세관 및 분·지국 현황>

직속세관(4개)	분·지국(12개)	
지룽(基隆) 관세국	리우뚜 분국, 우뚜 분국, 화리엔 분국(3)	
타이베이(台北) 관세국	신주과학공업 지국, 타오위엔 분국(2)	
타이중(台中) 관세국	가공수출 지국, 마일리오 지국(2)	
까오슝(高雄) 관세국	가공수출 지국, 중썩 분국, 까오슝 공항 분국, 치엔쩐 분국(4)	
*관세총국	타이페이 우체국 지국(1)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 세관은 수입 화물의 통관 및 관세 징수를 관리 감독하며, 검역담당 부서가 실시한 검역결과에 따라 통관을 결정
 - 동·식물검역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 수화물의 내용, 규격, 라벨링 등을 포함한 검역 :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품관리국이 주관하여 표준검역국이 실시

2. 수입통관

- (통관 구분) 일반적으로 일반통관과 특수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물 운송수단 등에 따라 해운통관, 항공통관, 간이통관으로 구분 됨
 - 일반통관 : 해운통관, 항공통관
 - 선박 또는 항공을 이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통관 방법
 - * 통관수속 대상 : 선박·항공기의 화물, 여객 휴대 수화물 등
 - 특수통관 : 국제 택배 및 우체국 국제 소포 등을 간이(簡易)통관 하는 것으로 선박·항공기의 화물, 여객 휴대 수화물 등이 대상이 되고 있음
 - 간이통관 : 수입신고 생략 또는 기타 간이(簡易)한 방법으로 통관 제도
 - 물품 금액이 적고, 대금결제를 하지 않거나,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등의 경우로 여행자 휴대품, 컨테이너, 관세 면제 정부용품 등이 해당됨
 - 우편물통관 : 수입신고 및 면허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우체국에서 간단한 검사만으로 통관이 되는 제도
 - 미화 5,000\$ 이하의 우편물이 해당되며, 미화 5,000\$ 이상이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 ATA Carnet(아타 까르네) 통관 :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제도로 ATA협약 가입국(미국, 대만, 중국, 일본, EU 등) 간에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
 - 일시적인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 및 관세·부가세·담보금 납부 등이 “ATA 증서(유효기간은 1년, 연장 불가)” 로 대체됨에 따라 신속한 통관을 할 수 있음

- 대상물품 : 상품 샘플, 직업용구, 전시회 물품 등
- * ATA :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
- 특송 화물의 특수통관(快遞通關) : 특송 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70kg 이하의 수입금지물품이 아닌 경우 수량, 금액, 중량 등이 규정에 부합하면, 특송 전용구역·항공화물터미널 등에서 신속,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는 제도
- 위 통관 요건을 갖춘 특송 화물은 24시간 통관, 물품수입 전 사전 신고 가능, 적하목록과 신고서를 합한 간이신고로서 통관이 가능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AEO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수출입 물품검사 및 통관 절차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대만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 AEO 인증 업체 :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안전성, 법령준수노력, 성실성 등을 공인 받은 수출입과 관련된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 * AEO 인증 : 신청인의 업무체계 정비 정도, 재무상황, 서류관리, 보안관리, 안전관리, 법령준수, 화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증

☞ **AEO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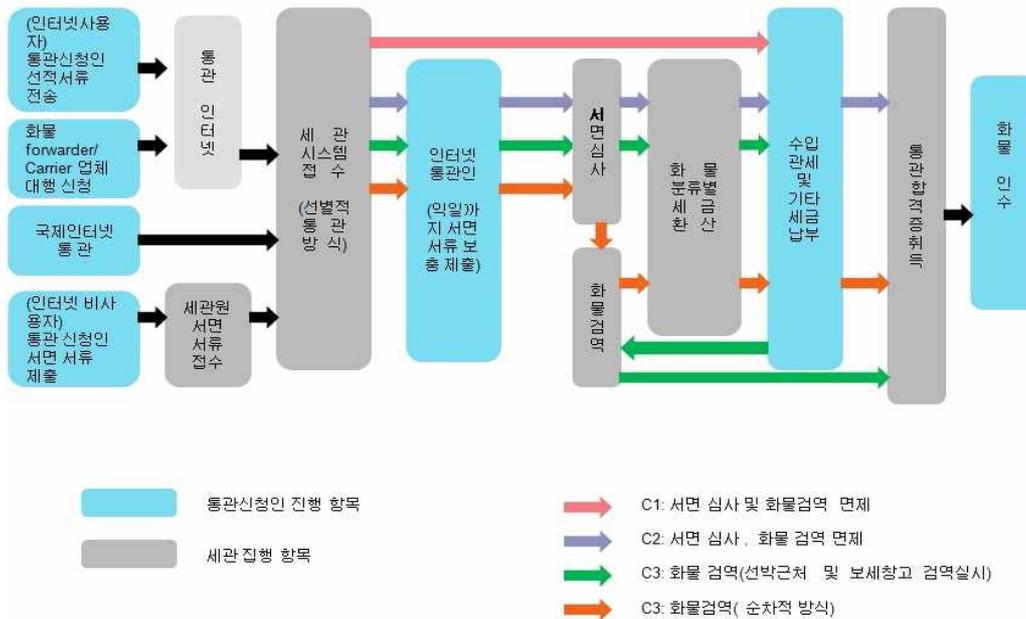
2001년 미국 세관의 9.11테러에 따른 안전강화 조치로 통관 지연이 문제되자 세계관세기구(WCO)는 AEO 인증 제도를 만들고 2005년에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 전체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도입 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은 AEO를 C-TPAT라고 쓰고 있음

□ (통관 수속 및 절차) 대만의 화물통관 자동화 시스템(TV System, Trade Value Add Network)을 이용하여 통관 수속 등 처리

- 대만은 1994년 11월부터 수입되는 해운화물에 대하여 “해운화물 통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든 수입물품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통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화물의 보세구역(CY, 보세창고) 반입, 세관에 수입신고서 제출, 세관의 심사, 통관방식 결정, 검사 실시, 관세 등의 납부, 수입 면허, 세액심사(사전 또는 사후), 출고 순으로 진행
- * 대부분의 통관이 위탁을 받은 통관업자가 진행(통관대행 수수료 : NT\$700~800/건)

<일반화물의 수입 통관절차>



*자료 : aT,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통관 세부 절차

① 보세구역 반입

- 모든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보세구역 또는 컨테이너 집하장(CY)에 반입된 이후에 수입신고가 가능 함

② 수입 신고

□ 수입신고 시점 - 신속통관 관련

- 수입신고는 보세구역에 수입화물이 입고된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수입화물 입항 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방식이 있음
 - 입항 전 수입신고 : 수입신고인은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수출국에서 출항하여 대만의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
 -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대만 항구에 입항은 하였으나,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

- 세관 수입신고는 직접신고와 위탁신고 방식이 있음
 - 직접신고 : 납세의무자가 직접 해관에 가서 신고
 - 위탁신고 : 위탁업체에 수입신고 및 납세 등의 수속을 위탁
- 신고기한 : 15일 이내 수입화물이 있는 지역의 세관에 신고
 - 기한 내(선박 입항 다음날부터 15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신고 지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과태료 : 200NT\$/1일)
 - 36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관이 입항화물을 판매하여 세금과 필요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은 해관이 보관
 - * 보관 잔액 : 5년 내에 수입업체가 증빙서류(선하증권 등)를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음
- 신고방식 : 통관 인터넷 시스템이용, 서면서류 직접 제출, 국제인터넷 이용의 3가지 방식이 있음
 - 통관인터넷 시스템 이용 : 통관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입신고 관련 서류 (INVOICE, B/L 등)를 세관 규정·방식에 따라 입력 한 후 세관에 전송하면, 15분 내에 수입신고 접수결과를 통지 받음
 - * 동 시스템을 통해 수입품의 통관방식(C1, C2, C3), 수입납세통지서, 서면 및 자료 수정 요청통지, 반출허가 통지 등의 회신과 수입 통관과정을 검색할 수 있음
 - 서면자료 직접 제출 : 직접 수입신청서류(수입면장 등)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원이 자동화 시스템에 접수서류 내용을 입력함. 이후의 통관절차는 인터넷 시스템 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관 절차 수행
 - 국제 인터넷 수입신고 : 대만 세관이 발부한 공상빙증(工商憑證), 자연인빙증(自然人憑證) 등의 증명서를 취득하고 국제 인터넷 통관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 신고하는 방식
- 수입신고 제출(첨부) 서류
 - 수입신고서(進口報單, Customs Declaration)
 - 송품장(Invoice) 또는 상업용송장(Commercial Invoice) : 1부
 -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 1부(서면자료 직접 제출시)
 - 통관 인터넷으로 제출자는 미제출(운송업체에서 자동적으로 별도 제공)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 1부(포장이 2box 이상일 경우)
 - * Bulk 및 단일 box 포장일 경우 제출 불필요
- 컨테이너적입명세서(Container Loading List) : 1부(2개 컨테이너 이상시)
 - * 1개 Container 이용 시 제출 불필요
-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I/P) 원본(*수입제한 항목에 해당)
 - * 제출면제 대상 : 경제부 국제 무역국에 등록된 수입업체, “便捷貿 e 網” 을 이용해 신고한 수입신고서에 문제가 없는 업체, 세관협조검사수입품표(稅關協助查核輸入貨品表)의 면제품, 정부기관 또는 공영사업, FOB조건 US\$ 20천불 이하 물품 등
- 위임장(委任書, Power of attorney) : 1부(위탁신고의 경우)
 - * 통관대리인과 납세의무인의 공동 서명이 된 위임장
 - * 인터넷 이용 통관자는 서면자료 보완시 통관대리인(관세사)의 인장날인 면제
 - * 장기 위임장 첨부 면제 대상 : 선 반출 세금 납입 후 담보 제공, 세관이 허가한 선박 근처 검사 및 인도 등
- 가격신고서(Declaration of Value, D/V) : 2부
 - * 특수 관계 유무, 무역조건, 비용부담 정황 보고
 - * 첨부 면제 대상 : 여행객 수화물, 우체국 국제소포, 샘플, 증여품, 면세화물, 정부기관 및 공영사업 수입화물, 농업과학기술원 및 과학공업 사업에 필요한 보세화물, 보세공장 및 가공수출구역 화물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C/O)
 - * 수입관리법(제11조)에 의거, 반드시 원산지 표시 또는 통관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 * 특혜 원산지규정(특혜세율, 협정세율 등)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필요
-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등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 자료, 통관에 필요한 자료 및 세관이 요청하는 자료
 - * 농약제품은 농약 허가증 및 농약판매업자격증 필요

♣ 원산지 규정 ♣

- ◆ 원산지증명은 대만의 관세법, 원산지인정표준, 세관인정수입화물 원산지 작업 요점을 표준으로 함
- ◆ 수입물품의 원산지 제출 구분
 - 일반 화물의 원산지 및 후진국(관세우대)의 원산지 인정
 - 대만과 FTA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관세우대)
- ◆ 화물포장의 원산지표기와 선적서류가 일치시 세관의 원산지증명자료 요청이 면제되나, 문제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 증명 또는 샘플을 요청
 - 원산지 재검사는 단 1회에 한하여 2개월로 하고, 물품 검역 기간도 2개월 연장하되, 기간 연장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원산지 증명 문건 : 무역서류, 원자재의 생산제조·가공 자료 등 모든 관련자료
 - 제출된 원산지 증명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세관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경제부 등의 협조를 의뢰하고, 20일 이내에 서면자료를 받지 못하면, 현 자료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인정
- ◆ 원산지는 물품의 최종 형질변형 국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인정(*경제부 및 재정부가 별도 지정한 특정 원산지 인정기준 국가 수입품 제외)
 - 원자재 가공·제조 물품이 그 원자재가 HS code 앞 6자리 수와 상이할 경우 불인정
 - 위의 경우에 다른 중요 제조과정으로 완성되거나 부가가치율이 35% 이상일 경우 인정(*부가가치율=수출가격(FOB)-직간접수입원료가격(CIF)/수출가격(FOB))
 - 앞자리 6자리 수가 변경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 경우 실질 변형 불인정
 - 운송 혹은 저장 기간에 필요한 보존 작업을 했을 경우
 - 화물 출하, 선적 시 분류, 분급, 분리포장, 별도 번호표시 또는 라벨 재 부착 작업을 했을 경우
 - 화물 조합 또는 혼합 작업을 통해 그 조합 및 혼합 전과 그 화물 특성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경우
 - 간단한 절개 또는 봉합 조립 등의 가공 작업을 한 경우
 - 간단한 건조, 희석, 농축 작업으로 화물 자체를 미 변경한 경우

◆ 세칙분류표 제2란에 해당하는 관세 우대국 상품 판단기준

- 물품 생산이 동일 국가 내에서 완전히 진행되는 “완전취득” 인 경우
- 한 국가 및 지역 내에서 생산된 광산품, 동식물 및 그 취득품, 어류 등
-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신청 등기한 선박이 어획한 어류 및 그 제조품
- 한 국가 또는 지역의 해양 영역에서 발굴한 해양 상품
- 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및 제조 후의 잉여분 또는 폐기분
- 한 국가 및 지역에서 상기 항목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생산된 완제품
- 원자재 수급 및 제조 등이 여러 국가일 경우의 원산지는 최종 실질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함

◆ 저개발국의 수입화물의 원산지 판단 기준

- 화물 생산이 동일 국가 내에서 완전히 진행되는 “완전취득 “인 경우
- 원자재 수급 및 제조 등이 여러 국가일 경우 원산지는 최종 실질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그 부가치세가 50%이상이어야 함
- 단, 다만 원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그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 후진국 화물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운송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 수출국에서 직접 대만으로 운송
- 제 3국을 경유 시에는 화물 운송 기간 내 상품의 적재 외에 가공 및 기타 작업을 해서는 안 됨

③ 세관의 통관심사

수입되는 모든 화물을 대상으로 신고의 적정성, 법률적 요건의 구비, 필요 서류의 제출, 기타 우범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 됨

통관 심사방식 결정

- 대만에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관세법(제23조)에 따라 일부 심사가 면제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함

☞ **대만 관세법 제 23조**

세관은 수입, 수출 및 중계 수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검사 또는 면제를 실시한다. 필요 시 견본을 채취할 수 있으며 기술 검정에 필요한 양만을 채취하도록 제한한다. 전항의 검사, 견본 추출의 방식, 시간, 장소 및 검사면제 범위는 재정부(財政部)가 정 한다. 제1항의 화물의 검사 시 그 이전, 개봉, 원상회복 등 사항 및 필요한 비용은 수출입 화물의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 수출인이 부담한다. 중계수입인 경우 운수업자가 부담한다.

- 통관심사는 수출·수입업체의 신용도 등에 따라 C1, C2, C3의 심사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 C1 방식(免審免驗) : 서류심사면제, 물품검사면제 - 무심사 통관
 - 수입 물품에 대해 서류검사, 물품검사 없이 통관심사를 종료하며, 관세 등이 납부되면 세관은 즉시 통관을 면허 함
 - * 제한적 상황인 경우 세관원 요청에 따라 선행 통관일 익일부터 3일 내 보완 자료를 제출(발송)해야 함
 - C2 방식(要審免驗) : 서류심사진행, 물품검사면제
 - 수입 신고인(대리인)에게 수입신고 관련서류(장명세서, 컨테이너 적입명세서, 카탈로그, 도면, 공증서 등)를 제출하게 한 후 수입 신고인(대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방법
 - 세관은 소명을 통한 서류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통관을 면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세관이 납득하지 못한 경우)는 물품검사로 이어짐
 - C3 방식(要審要驗) : 서류심사진행, 물품검사진행
 - 수입신고서, 제출서류만으로 신고의 적정성, 각종 요건 등의 확인이 어렵고, 신고 된 물품 외 물품 은닉, 수입신고 현품의 일치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수입물품을 직접 검사하여 확인하는 방식
 - ※ C2, C3 방식 결정시 : 세관 시스템 선별적 통관 방식에 따라 통지 접수일 익일 정상 퇴근 전까지 서면 자료를 발송해야 함

【 물품검사 절차 】

- (물품검사 신청) 물품검사대상에 지정된 화물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세관에 검사를 신청(수입 신고인)해야 함
 - * 기간 내에 신청이 없으면, 세관이 수입물품이 있는 창고관리원의 입회하에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진행
- (물품검사 장소) 해당 수입물품이 있는 장소
 - * 단, 세관이 필요할 경우 검사장소를 지정하고, 수입신고인은 지정 장소로 물품을 반입 하여야 함

- (물품검사 준비) 수입신고인이 물품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 함

* 소요비용 : 상하차 비용, 개장·포장 인력 배치, 재포장 비용, 장비 확보 등

- (물품검사 참석) 수입신고인(대리인)은 물품검사의 적정성 확인 및 세관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소명을 위해 검사현장에 참석하여야 함

※ 물품검사는 간이검사, 일반검사, 정밀검사 등으로 세분 됨

- 간이검사 : 컨테이너 한 건을 발췌하여 품명, 수량, 재질 및 마크를 확인
- 일반검사 : 마크확인, 포장개수 및 5% 이내의 상품 개장검사
- 정밀검사 : 집중검사구역에 컨테이너 내장 화물을 옮겨 해체검사, 또는 해체 입고 검사를 하며, 10% 이내의 개장검사 실시

- (물품검사 완료) 검사결과에 따라 신고 내역의 정정 또는 통관허용 여부 확정

* 검사가 완료된 화물은 세관이 컨테이너를 재 시봉하고 운송장 쉘 번호를 수정하기 때문에 적하목록상의 쉘 번호가 수정됨

- (검사결과 통지)

- 검사직원 : 검사가 종료되면, 세관화물검사통지서 2부를 출력하여 1부는 신고서에 첨부, 1부는 신고인에게 2회 교부 (*오전 1회, 오후 1회)

- 신고인 : “화물 검사결과 통지서” 를 받는 즉시 창고업자에게 통지하여 화물이송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함.

* 신고인과 창고업자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 통지

④ 관세 등의 납부, 담보의 제공

대만의 관세납부 제도는 신고납부제도(납세 후 통관)를 원칙으로 하고, 담보제도(통관 후 납세)를 병행운영 하고 있음

신고납부제도(납세 후 통관)

- 대만은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동시에 하는 “신고납세방식” 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수입신고 내용 : 화물의 품명(HS 코드), 수량, 과세표준, 세액 등

* 신고금액(관세 등)의 적정성 여부는 물품 통관 후 심사

- 관세와 함께 내국세(무역진흥 서비스 비용, 화물세, 영업세, 주세, 담배세, 건강복지세, 특별화물 및 노무세 등)도 납부해야 함

※ 통관절차 : 수입신고(납세신고) → 관세 등 납부 → 수입 면허 → 반출

□ 담보제도(통관 후 납세, 先 통관 後 심사)

-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의 세금(관세 등)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관세 등의 실제 납부에 상관없이 수입물품 통관 후 관세 등을 징수하는 방식

* 담보제공 여부는 수입신고자 자유사항. 담보 종류는 현금, 채권, 보증서 등 임

* 관세 등이 정해진 기간(14일 이내)에 미 납부되면, 세관은 담보로 관세 등을 충당

※ 통관절차 : 수입신고(납세신고) → 담보제공 → 수입 면허 → 반출 → 관세 등 납부

⑤ 수입 면허

- 세관이 수입자의 수입신고 내역이 적법·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인에게 수입 면허통지서 발급

- 수입면허가 된 시점부터 수입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바뀌고, 보세구역(창고)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 함

⑥ 세액심사

- 수입물품의 신고인이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정확히 관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사전세액심사, 사후세액심사가 있음

- 사전세액심사 : 세관이 다음 같은 경우에 수입면허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

- 신고화물과 실제화물이 다른 경우
- 수입자의 신고 가격에 명백한 이상이 있는 경우
- 불성실 업체의 수입물품
- 전시품 등 실제 거래가 없는 수입화물 등

- 사후세액심사 : 세관이 수입화물을 통관 시킨 후 세액의 정확성을 심사·확인하는 것(*신고납세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화물이 대상)

- 세관은 수입화물 통관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사후세액심사 여부를 통지하고, 2년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6개월 이내에 세관의 통지가 없으면, 기 납부한 세액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됨

⑦ 물품반출

- 물품반출은 수입통관의 마지막 단계로 세관이 가장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세금의 완납여부 및 금액의 오차유무 확인(세금의 사전납부 시)
 - 미납 혹은 연체된 세금 유무 및 연체에 따른 과태료 유무 확인
 - 검사 시 요구 서류 구비 여부 확인
 - 세관규정의 위반 사항유무 확인(*위반이 있는 경우 유보 수속절차 등 확인)

과세표준 및 관세평가

① 과세표준

- 관세 등의 세액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또는 수량(중량, 용적 등)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서의 화물 가격 또는 수량
 - 과세표준이 가격인 것을 종가세, 수량(중량, 용적 등)인 것을 종량세라고 하며, 가격과 수량(중량, 용적 등)인 것을 종가종량세(복합세)라고 함
 - 종량세(從量稅) : 수입화물의 수량, 중량, 용적 등(과세표준)을 기준하여 세액 산정(*산정방법 : CIF가격 × 수량)
 - 수입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는 16개 농산물에 대하여 종량세 시행
 - * 수입 쿼터제 적용 농산물 : 동양 배, 식용쌀, 바나나, 녹용, 팔, 우유(액체 타입), 땅콩, 마늘, 건포고, 건팽이, 야자, 빈랑, 파인애플, 망고, 유자, 용안과육
 - 종가세(從價稅) : 수입화물의 가격을 기준하여 세액 산정(*산정방법 : CIF 가격 × 세율, 대부분 수입화물의 세액산정 방식)
 - 복합세 : 동일 과세 코드 내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적용하여 과세 징수함

② 관세평가

-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물품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WTO의 관세평가협정(관세평가 국제적 통일기준)을 적용함
 - 과세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의 재량 임
 - * (미국) FOB 가격, (일본, 중국, 대만, EU 등)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적용
- WTO 관세평가협정은 제1방법~제6방법까지의 관세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제1방법 적용을 할 수 없으면 제2방법 등으로 순차적 적용을 하도록 함
 - 기초 과세가격 :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 판매가격(제4방법), 당해 생산비 등의 산정가격(제5방법), 합리적인 기준가격(제6방법)

품목분류 및 관세율 분류

① 품목 분류 체계

- 대만의 수입 품목은 “중화민국 통관 수입세칙(中華民國海關進口稅則)”에 따라 분류되고, HS(Homonized System) Code 코드 체계를 준용하여 11단위의 코드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 대만의 HS Code 11자리 중 앞의 6자리는 국제적인 HS Code와 같음

☞ 화물 수입전 HS코드 예비 심사

- 수입신고자(대리인)는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수입품의 HS Code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은 서면으로 답해 주어야 함
- 수입신고자(대리인)이 세관의 HS Code 심사를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수입 전 재정부 관세총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관세의 적용 분류

- 대만은 수입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종류를 제1란, 제2란, 제3란으로 분류하여 관세율을 규정하고 관리 함

- * 위 관세 외에도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이 있음
 - 제1란(Column I) : 152개의 세계 무역 기구(WTO) 회원가입국 및 대만과 호혜 대우관계를 체결한 37개국의 수입품에 적용함 (대한민국 적용 관세율)
 - 제2란(Column II) : 대만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 제3란(Column III) : 제1란), 제2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입품
- ☞ 제1란, 제2란, 제3란의 관세율이 동일 물품에 중복되는 경우, 우선 제1란~제2란 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제1란~제2란 대상이 아니면 제3란 세율을 적용함

<대만의 배 관세율>

구 분	제1란 (Column I)	제2란 (Column II)	제3란 (Column III)
배 (신선)	NT\$49/Kg	NT\$49/Kg(GT), NT\$49/Kg(HN) NT\$49/Kg(NI), NT\$49/Kg(PA) NT\$49/Kg(SV)	NT\$58/Kg

- ※ 인터넷을 활용해 대만의 세부품목별 관세를 조회할 수 있는 곳
 - ▶ 대만 관세총국 : <http://web.customs.gov.tw/rate/rate/search.asp>
 - ▶ 대만 WTO센터 : <http://db.wtocommerce.org.tw/tariff-index.asp>

○ 한국 수입 배의 적용 관세율

HS Code	품 명	관세율
08083090	기타 신선배	NT\$49/kg
09818000	08083090호의 기타 신선배	18%
20084000	기타방식 제조 혹은 저장한 배	20%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수입품에 대한 기타 국세

- 무역진흥 서비스 비용(Trade Promotion Service Fee, 推廣貿易服務費)
 - 특정 면세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목에 CIF가격의 0.04%를 적용

* 면세품목 :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가공수출단지, 과학공업단지, 면세상품 및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

- 화물세(貨物稅) : 특정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 성격, HS Code 기준 약 400개 품목이 해당됨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 =세금완납가격(CIF가격)+수입세 세율
 - 종가세 적용품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화물세율표(화물세조례 참조)
 - 종량세 적용품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화물세(단위) 세액
 - 화물세 면제대상(화물세 조례 적용)
 - 제조 후 화물세가 별도 지급되는 상품의 원료, 전시회 참가 등 국내 비매품, 군사 증여품, 국방부가 허가한 직접 군용사용 화물
- 담배세, 건강복지세 : 수입 담배(담배세+건강복지세)에 부과 되는 세금
 - 부과금액 : (일반담배) NT\$1,000/1000개, (시가렛) NT\$1,000/kg, (담배가루) NT\$1,000/kg, (기타 담배) NT\$1,000/kg
- 주세 : 수입 주류에 부과되며, 주로 종량세 형태 임
 - 양조주류 : (맥주) NT\$26/ℓ, (기타 양조 주류)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7/ℓ
 - 증류주류 :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2.5/ℓ
 - 합성주류 : 알코올 성분이 용량 대비 20%이상인 경우 NT\$185
 - 요리용 주류 : NT\$9 징수/ℓ
 - 기타 주류 :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7/ℓ
 - 알코올 : NT\$15/ℓ
- 영업세(Business Tax) : 모든 수입물품의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Value Added Tax)에 대하여 5%를 징수하는 세금
 - 영업세는 영업세법 제41조에 가치형과 비가치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 영업세액=세금완납가격×영업세 세율(5%)
- 특종화물 및 노무세 (特種貨物及勞務稅) : 특정한 수입 사치품, 차량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10%가 추가 부과되는 세금
 - 가구, 산호, 상아, 피혁 등 : NT\$50/kg
 - 자동차, 유람선, 헬리콥터, 비행기 : NT\$300/kg 이상

VI. 식물검역제도

①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	----------------------------

개정 2016.10.1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95호

1. 과수원 요건

- 가. 대만 수출용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재배농가는 해당 과수원에서 재배기간 중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 *C. niponensis*)에 대하여 방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대만 수출 사과, 배 및 복숭아의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라 한다.)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출검역요건 교육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및 복숭아 재배농가가 농촌진흥청(이하 “RDA” 라 한다.) 에서 작성한 병해충 방제력 및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방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동식물방역검역국(이하 “BAPHIQ” 라 한다.) 식물검역관에게 이 병해충 방제력을 제공한다.
- 다. 대만 수출용 배는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의 직경이 2.5cm 이하일 때까지 봉지를 씌워 재배되어야 한다.
- 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BAPHIQ 식물검역관은 대만 수출 과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봉지씌우기 재배, 예찰 및 방제, 예찰과 방제사항 기록 등 복숭아심식나방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마.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에 대해 다음의 요령에 따라서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지도사가 전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담 지도사 책임 하에 예찰요원을 활용하거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예찰트랩 종류 및 설치
 - (가) 트랩종류 : Z7-20-11Kt 유인제와 끈끈이 판이 부착된 Delta trap 또는 Wing trap
 - (나) 설치시기 : 5월 31일까지
 - (다) 설치장소 : 기주 과실나무
 - (라) 설치높이 : 지상에서 1.5m
 - (마) 설치개소 : 과수원 면적 기준 매 ha당 1개소(1ha 미만인 경우에는 1ha로 계산)
 - (2) 조사기간 및 간격
 - (가) 조사기간 : 6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 (나) 조사간격 : 조사기간 중 2주 간격
 - (3) 조사방법 : 예찰트랩에 부착된 복숭아심식나방 개체 수 조사
 - (4) 유인제 및 끈끈이 판 교체
 - (가) 유인제 : 2개월 단위
 - (나) 끈끈이 판 : 2주 간격
 - (5) 전담 지도사는 예찰사항을 예찰트랩 및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예찰결과를 매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예찰결과 1개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3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농가에 예찰결과와 방제방법을 통보하고, 인근 수출농가에도 방제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6) 수출농가는 복숭아심식나방 방제사항 및 예찰결과 복숭아심식나방 검출 및 방제조치를 통보받아 추가 방제를 실시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전담 지도사는 농가의 방제기록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기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바. 수출농가와 전담 지도사는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및 방제기록부 사본을 수출 선과장에 제공하여 BAPHIQ 식물검역관의 한국 방문 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 사과 및 복숭아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수출농가를 등록하고 선과장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는 수출농가 등록 및 수출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배농가 대표, 수출업체, 선과장 대표 및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수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2)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배농가의 행정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선과장에서 제출한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 수출협의체 협의를 거쳐 수출농가로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선과장과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4) 선과장과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선과장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 아. 배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 생과실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선과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자. 지방자치단체와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농가 등록을 하고도 최근 2년간 대만 수출에 참여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받지않은 농가를 수출농가 등록대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신규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수출농가 등록대장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역

- 가.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와 협의하여 사과는 수확 15일전, 복숭아는 수확 10일전에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정보통신망(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을 통해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재배지검역신청을 접수한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농가별 재배지검역 계획을 수립하고 식물검역관은 전담 지도사 입회하에 과실 수확 전까지 재배지검역을 완료해야 한다.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다. 재배지검역은 과수원별로 엑스(X)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다음의 요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표본추출 방법 : 과수원 면적 기준

- 1ha 이하 : 10주, 주당 20과(무작위), 총 200개 과실
- 1ha 초과 1.5ha 이하 : 15주, 주당 20과, 총 300개 과실
- 1.5ha 초과 2ha 이하 : 20주, 주당 20과, 총 400개 과실
- 2ha 초과 시 매 0.5ha마다 5주, 100개의 과실을 추가

(2) 표본으로 추출된 과실에 대해 복숭아심식나방 감염여부를 육안 또는 절개하여 검사한다.

(3) 해충 발견 시 현장에서 분류동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라.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예찰트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예찰 및 방제기록이 없는 과수원 및 제1호마목의 예찰요건을 위반한 과수원은 불합격 처리하고 재배지검역을 중단한다.

마. 재배지검역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거나 “라” 항에 해당하는 과수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연도에는 대만 수출대상에서 제외시킨다.

3. 선과장 요건

가. 선과장 승인

- (1) 대만 수출용 생과실을 선별·포장하고자 하는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매년 4월30일까지 선과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정보통신망(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을 통해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간 이후 승인된 선과장이 시설이 보완되거나 선과장을 신속한 경우 추가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선과장이 제1호사목·아목·자목과 제3호나목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2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지조사 결과 선과장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만 수출 선과장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동일 선과장인 경우에는 매년 코드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미 부여된 선과장 코드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선과장 구비요건

- (1) 모든 과실은 수확시점부터 선과기간 동안 저온 저장창고나 밀폐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장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과 격리 보관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저장실이 있어야 한다.
- (2) 5월부터 10월 중에 선과작업을 하는 선과장에는 방충시설(선과장의 창문 및 환기구에는 직경 1.6mm 이하의 망, 출입구에는 에어커튼, 고무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3) 선과장에는 병해충 감염과실 선별을 위한 검사대, 병해충 제거장치 및 집진시설, 조명시설 등 생과실 선별시설과 식물검역관 전용검사대 및 봉지를 벗기는 격리된 장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4) 각 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선과 전문가 1명 이상을 선과과정에 배치하여 복숭아심식나방 감염험의가 있는 과실을 선별하여야 한다.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각 선과장의 선과 담당자에 대하여 선과요령 등을 교육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선과전문가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5) 각 선과장은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비(非)페로몬 트랩(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 등)을 지상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6)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선과장 내 비(非)페로몬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사실을 선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과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를 BAPHIQ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선과장 승인취소

- (1) 대만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된 선과장이 별표1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수출 선과장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선과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2) 승인 취소된 선과장은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음해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취소 사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고 대책에 따라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확인 결과 해당 선과장에 대한 승인취소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과절차

- (1)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연도 선과시작 1일 전까지 선과장 및 저장시설을 점검한 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대만 수출용 과실을 저온 저장창고나 밀폐된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때에는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과 완전하게 격리시켜야 한다.
- (3) 선과장의 선과 전문가는 대만 수출용 배 생과실이 선과장에 반입되기 전에 봉지 씌운 상태를 확인하여 봉지가 개봉, 파손 또는 제거된 과실은 선과장 반입을 금지토록 하고 식물검역관은 부적합한 과실이 선과장에서 발견되면 이를 수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단,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 사이에 수출농가의 배 봉지 제거작업을 선과전문가가 확인한 경우에는 봉지가 제거된 배 생과실이 선과장으로 반입될 수 있다. 이 경우 봉지가 제거된 배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과전문가는 배 봉지 제거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기록대장을 선과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4) 선과장은 매일 선과 및 포장작업이 시작되기 전후에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대만 수출용 생과실 선과 및 포장작업은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과실과 동시에 실시되지 않아야 하며, 일몰 후에는 선과, 포장작업 및 컨테이너 적재작업 등 선과관련 작업이 중단되어야 한다.
- (6) 식물검역관은 선과 및 포장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 (7) 선과장은 선별된 과실을 별도의 용기에 수거하여 매일 폐기·소각하여야 한다.
- (8) 선과장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선과 1일 전까지 선과계획(품목 및 품종, 선과기간, 선과예상량, 수출량, 수출회사 등)을 제출하고, 매일 선과가 끝난 직후에는 당일 선과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 (9)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성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약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만의 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의 과실에 대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서류 보관

선과장은 다음의 과수원 예찰, 방제 및 재배지검역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BAPHIQ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전담 지도사의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 예찰기록부 사본
- (2) 수출농가별 복숭아심식나방 방제기록부 사본
- (3) (사과, 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재배지검역 결과 통보서
- (4) (사과·배·복숭아) 대만 수출농가 등록대장
- (5) 대만 수출선과장 승인서

- (6) 선과전문가 교육수료증
- (7) 대만 수출 선과장 내 복숭아심식나방 예찰기록대장
- (8) 배봉지 제거상황 기록 대장

바. 포장재 요건

- (1)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선과장 이름 또는 선과장 코드번호가 표기 되어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Name of Fruit	
Code No. of Packing House	

또는

Name of Fruit	
Name of Packing House	

- (2) 포장상자에 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차단하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사. 선과장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과실 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과실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과실 상자를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까지 운송하는 때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 또는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 (3) 검역이 완료된 과실이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은 과실과 함께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아. 포장이 완료된 과실을 다른 수출 선과장으로 이송 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의 승인후 이루어져야 하며 선과장간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및 포장되고 포장재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한함
- (2) 운송시에는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
- (3) 관할 지역이 다른 선과장간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통지하여 서로 확인

(4) 수출검역은 최종 수출 선과장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선과장별 코드번호와 포장수량을 표기

4. 대만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요건

가. 매년 현지조사 1개월 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배, 사과 및 복숭아의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 확인을 위한 대만 식물검역관의 파견을 BAPHIQ에 요청하여야 한다.

나. BAPHIQ에서 파견한 검역관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양국이 합의한 아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BAPHIQ 대신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BAPHIQ가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던 동일한 품목

(2) 지난 시즌 수출 및 수입 검역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만의 금지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던 품목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BAPHIQ 대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지조사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BAPHIQ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초청 서신에는 제3호가목의 선과장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시즌 중 신규로 등록된 선과장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가된 선과장 목록을 지체없이 BAPHIQ에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대만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5. 수출검역

가. 대만 수출용 생과실 수출검역은 제4호에 의한 BAPHIQ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초청 서신 발송 후 개시한다.

나. 식물검역관은 선과과정 중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 매일 폐기하도록 선과장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검역단위(Lot)에서 2% 이상의 상자를 임의로 추출하여 상자 내 모든 과실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역 수량은 필요시 증가될 수 있다.

라.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역신청 건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과실이 발견된 과수원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된 과실은 대만 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복숭아심식나방 이외의 살아있는 나비목 유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검역신청 건에 대해서만 불합격 처리한다.

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선과장에서 포장된 과실의 대만 수출을 중단시켜야 하며 이 상황을 BAPHIQ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과실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 과실의 검역결과 복숭아심식나방과 BAPHIQ에 의해 지정된 기타 검역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

선과장 코드번호 :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코드번호-승인번호, 검역일자 : 월, 일, 년”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ach fruit moth and other quarantine pests designated by BAPHIQ.

Code No. of Packing House : ○○-○○,

Date of Inspection : month, day, year”

사. 검역합격 후 14일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재검역을 받은 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수출될 수 있다.

6. 수송 중 안전 요건

화물이 제3국이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BAPHIQ에서 규정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을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나 지역에서 환적하기 위한 요건” 이 적용된다.

7. 대만의 수입검역

- 가.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에 대한 대만의 수입검역 절차, 방법 및 검역 수량은 “대만 식물보호 및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관이 발급한 수출 식물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에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포장상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은 대만으로 수입될 수 없다.
- 다.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다.
- 라. BAPHIQ는 수입검역 과정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통보 시에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포장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 및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8. 수출중단 및 재개

- 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만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BAPHIQ로부터 과실이 생산된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해 6월 중에 1회 받으면 지체 없이 동일 과종의 수출검역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중단 조치일 이전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중단 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적되면 대만으로 수출될 수 있으며, 대만의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는 경우 제7호다목 및 라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 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중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BAPHIQ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조사결과 수출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BAPHIQ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BAPHIQ는 시스템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물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 마. 수출중단 조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통보 내용에 대하여 BAPHIQ의 검토와 동의 또는 이와 함께 BAPHIQ 식물검역관이 한국측에서 요건 미이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검토와 동의를 한 후에 해제된다.
- 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통지를 과실이 생산된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중에 2회 받은 경우에는 복숭아심식나방의 모든 기주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제 8호가목 내지 제8호마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취소 요건

1. 선과장이 제3호 나목의 요건에 미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요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부정·불법수출에 관련된 경우
3. 대만 생과실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목의 수출검역요건 위반 사항이 식물검역관에게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가. 선과기간 중 선과장 내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 나. 수출용 배 생과실의 선과장 반입요건을 위반한 경우
 - 다. 대만 수출용 과실과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을 동시에 선과 및 포장을 하거나 격리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 라. 선과계획서를 관할 지원·사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마. 선과장에 예찰, 방제 및 재배지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바. 과실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운송시 1.6mm 이하의 방충망 또는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덮지 않고 이송한 경우
4. 수출용 포장상자에 대한 표기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대만의 수입검역과정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4회 이상 위반하여 안전성관리 기관이 취소를 요청한 선과장

② 대만의 식물검역제도

1. 개요

- 법률근거 : 식물 및 식물제품 방역검역방법
- 검역내용 : 제조국/생산국의 이슈 전염병 유무, 제조공장의 적합성, 가공제품의 가열처리 및 포장방법 등
- 식물검역 신청 시 구비서류 : 식물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선하증원(B/L), 기타서류(세관수입신고서 복사본, 영수증, 포장명세서)
- 전염병 지역
 - 화물이 전염병 지역을 경유할 경우 「역병충해 발생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제품의 밀폐식 화물상자 운반 신청서」를 작성해야함
 - 해당 화물은 「식물이나 식물제품 운송 도중에 특정 병충해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검역작업방법」이나 「밀폐식 컨테이너로 운송한 동물 제품의 「수입검역작업방법」에 근거하여 검역
- 위반 시 재제조치 : 수입식품 검험 검역 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처리 됨

2. 농산물 검역제도

- 잔류 농약량 안전기준(殘留農藥安全容許量標準)
 - 관련근거 :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
 - 기준에 따른 최대 농약잔류량 제한치와 실제 검사에서 검출된 농약잔류량은 제품의 무게기준으로 산출
 - 모든 식품(육류, 수산물류 제외)은 잔류농약 안전에 따라야 하고, 위생당국이 규정한 리스트에 없는 농약류는 검사되지 않지만 수입제품에 한해 규정된 허용치가 있으면 검사대상이 됨
 - 안전성이 높은 분류에 소속된 농약들은 최대허용치 제한이 없고 검사 면제
 - 기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금지농약 리스트에 소속된 농약들은 사용을 금함

농산물의 중금속 제한 기준

- 관련근거 :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
- 적용대상 : 과일, 채소, 허브류
- 적용대상의 중금속 제한 허용치

구 분	카드뮴	납
배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자료 :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한국 신선과일 수입검역 조건

구 분	검역 필수 병충해	납
배	<i>Carposina sasaki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i>Frakliniella occidentalis</i>	

공 통 제 한 사 항

1.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2.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필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함
 3. 운송 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또는 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를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nding; Delo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 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 처리. 검역 전 아래 중 하나와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 (1) 완전 밀폐식 포장
 -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의 방충망을 덮어야 함
 -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함
 -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시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자를 열어선 안 됨
 4.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5.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
 6.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 * 사과 : 2010년10월21일 갱신. 사과 외 과일: 2010년10월1일 갱신
 * *Frakliniella occidentalis*(양꽃 삼주벌레), *Carposina sasakii*(복숭아심식나방),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줄기선충), Arrow head scale;*Unaspis yanonesis*(회살까지벌레)

*자료 :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 한국산 신선과일 대상 복숭아 심식나방숙주 수입검역작업요점(2008/7/29)
- 본 요점은 한국산 사과류(Malus spp.), 배류 (Pyrus spp.) 및 복숭아 (Prunus persica) 등 신선과일의 수입에 대해 적용하고, 기타 한국산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숙주에 감염된 신선과일은 수입을 금지함
 - 공급과수원 조건
 -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을 생산할 경우, 그 공급과수원은 생산기간에 복숭아심식나방에 대비하여 엄격한 병충해 방지조치를 진행하고 방지기록을 작성해야 함
 - 한국지방정부 담당부처는 구역 내 생산자의 방지조치를 감독해야하고, 한국 농업진흥청(이하 농진청이라 부른다)의 유해생물 방지이력 일체를 확보함. 그방지이력 연도검역검사증명 시에 대만행정원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이하 방검국이라고 부른다) 검역인원에게 제공하여 확인함
 - 대만으로 수송하는 배 및 복숭아 과실은 유과가 직경 2.5Cm 미달 전에 봉지를 씌우고 봉함
 - 한국국립식물검역소(이하 식물검역소라고 부른다) 혹은 방검국 검역인원은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제공과수원에 대해 조사확인을 해야하고, 신선과일의 수확 후 부터 포장장소까지 운송과정 중 복숭아 심식나방에 대한 감염을 예방관리함
 - 농진청 소속 원예연구소 매년 검측방식으로써, 복숭아 심식나방의 산란기, 유충기, 신선과일 월동 준비 유충 탈피 최후 일자 등을 추산하고, 관련 자료를 식물검역소에 통지함. 검측방법은 아래와 같음
 - 기간 : 매년 9월 1일부터 복숭아심식나방 유충탈피 신선과일 월동의 최후시기까지 추산
 - 지역 : 한국의 중부지방, 동남부지방 및 서남부지방, 각 지방마다 2개의 측정소 설립
 - 방법 : 사용성 호르몬 유인 측정기
 - 화학성분 : Z7-20-11Kt
 - 유인기 형식 : Delta trap 그리고 Wing Trap

- 검사빈도 : 2일에서 3일마다 1회
- 설치고도 : 지면 1M 50Cm 떨어짐
- 설치지점 : 복숭아 심식나방의 숙주식물
- 위에 기술한 규정에 부합하는 제공 과수원은 식물검역소에 등기하여, 제공 과 수원 등기 장부는 포장장소에 의해 제작 년도검역검사증명서에 방검국 검역인원에게 제공 대조 확인함. 제공 과수원 등기 장부에는 생산자 성명, 주소, 생산된 신선과일종류 및 농작면적 등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포장장소 조건

-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포장장소에서 포장 개시 전 식물검역소 소속 관할구역 행정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조사함
- 포장장소 시설 및 인원
 -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은 수확에서 포장장소 이동까지 적당한 저온 냉장고 혹은 밀폐식 저장고에 보관하여 복숭아심식나방감염을 방지함
 - 포장장소는 매년 5월에서 10월간 방충시설을 구비해야 함. 만약 창문 또는 통 풍구가 있으면, 1.6mm 이하의 고르게 구멍이 있는 그물장치를 통해, 출입구 또는 문은 아래 방향으로 통풍되는 블라인드 또는 플라스틱 블라인드가 있거나 또는 기타방충시설을 설치해야 함
 - 포장장소는 신선과일 선별의 측정기구 설비를 구비해야하고, 광량이 충족되며, 신선과일의 선별 및 검사작업이 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 각 포장장소 내에 적어도 2개의 비호르몬 유인 측정기를 설치하여 복숭아 심식 나방의 발생을 측정해야 함. 만약 복숭아심식나방을 발견 시, 포장장소 포장 작업 결실 원인을 찾아낼 때까지 잠시 중지해야하고 이를 개정 후 다시 포장진행을 시작함. 포장 작업 잠시 중지에 관련한 상황을 동식물방역검역국에 통지함
 - 각 포장장소에 식물검역소의 교육훈련에 합격되고, 복숭아심식나방 감염과 실을 변식(변별하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인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함. 그 기술인원은 모든 고정의 선별 작업에 참여하여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될 가능성 있는 신선과일을 축출함

○ 포장장소 작업

- 포장 장소 내 모든 대만 수입 신선과일은 방검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제공 과수 원은 한국국내시장 판매와 타국으로 운반되는 신선과일을 저온저장고에 분리하여 보존되어야 함
- 신선과일 월동준비 유충탈피 최후일자 전에 수확한 배 및 복숭아 과실은 포장장소에 진입하기 전에 포장장소 인원은 자루의 안정성을 검사하고, 만약 종이봉투가 열려 봉합되지 않거나 혹은 종이봉투 파손 혹은 종이봉투 및 과실분리의 경우, 포장장소 반입을 금지함
- 포장장소는 매일 선별 및 포장작업 진행 전에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살충제를 분사해야 함
- 매년 5월에서 10월 사이,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포장과정은 타국가로 운반 혹은 한국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포장과정과 동시진행 할 수 없음
- 식물검역소 검역요원은 신선과일의 선별 및 포장작업을 감시해야 함
- 폐과실은 용기 안에 담아 매일 포장장소 밖으로 내보내 소제 혹은 소각함
- 포장장소는 매년 5월에서 10월 이외의 기간에, 만약 식물검역소 인가를 통한 엄밀한 방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일몰 후에 관련된 포장 작업을 집행해서는 안 됨

○ 포장장소는 과수원의 복숭아 심식나방 방지기록을 보유제공하고, 연도검역검사증명 시 검사기록을 방검국 검역인원에게 제공하여 확인 함

- 위에 기술한 규정에 부합한 포장장소는 식물검역소를 통해 조사 등기를 허가받고, 식물 검역소는 안내책자로 정리(내용은 포장장소명칭 및 대표번호, 주소, 책임자 및 포장 신선과일종류를 포함한다)하고, 년도 검역검사증명 전에 방검국에 제공하여 비교 대사 함. 대만으로 신선과일을 수송하는 기간 중 신규 증설 포장장소가 있으면, 식물 검역소는 바로 갱신 리스트를 방검국에 송달하고, 필요시 방검국은 한국이 검증 완료한 신규포장장소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고 관련 소요비용은 한국이 부담함

○ 포장재료 조건

- 각 포장 상자 표면에는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명칭, 포장장소 명칭 혹은 대표번호 및 「To Taiwan」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포장 상자 표면에는 만약 통풍구가 있으면, 구경 1.6mm 이하의 그물장치 또는 밀폐식 공구에 의하여 운송함

○ 검역 합격한 과일이 재차 해충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장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함

- 포장된 신선과일은 시설 외부에 방치하면 안 되며, 직접적으로 밖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 신선과일 운송에서 보존 장소 과정까지 구경1.6mm이하의 망사, 범포(帆布) 혹은 기타 방충 도구로 덮음
- 검역 합격한 신선과일과 미검역 과일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해서는 안 됨

□ 원산지 검증

- 매년 신선과일 수출 전 식물 검역소는 인원을 파견하여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과수원, 포장장소 및 수출검역작업 등을 검사하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것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에서 전담함

□ 수출검역

- 식물검역소 검역인원은 배 및 복숭아과실을 포장장소까지 운송 전에 과실 자루의 안정성을 검사해야하고, 만약 종이봉투가 열려 미봉합 혹은 종이봉투 파손 혹은 종이봉투 및 과실이 분리되면 포장장소 반입을 금지함
- 식물 검역소는 매년 사과를 수출하기 전에 방검국에 아래 열거한 시기에 통지해야함
 - 복숭아 심식나방 유충탈피의 신선과일 월동 최후 출현의 시기를 추산함
 - 대만으로 수송하는 사과 검역의 시기 처리를 시작하여 복숭아심식나방 유충탈피 신선과일 월동 최후출현 시기 후를 추산함
 - 선별 작업 기간에, 식물검역소 검역인원은 포장장소 과실을 철저히 제거 폐기할 것을 지도하고, 폐과실은 용기 안에 담아 매일 포장장소 밖으로 격리 소제 또는 소각함

- 포장작업 완료 후, 식물검역소 검역인원은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 더미에 따라 총 상자 수당 최소한 2% 추출 검사를 실시하고, 1개를 절개하여 과일 내부를 검사함 ; 검사의 비율은 필요시 증가할 수 있음
- 수출검역에서 만약 살아있는 복숭아 심식나방 발견 시, 그 해당 신선과일을 대만에 수입하지 않고, 검역을 다시 신청할 수도 없음. 그 제공 과수원에서 생산한 신선과일은 그해 전량 대만으로 수송하지 않음
- 수출검역에서 만약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그 포장장소는 이미 포장한 신선과일의 대 대만 운송을 잠시 중지하고, 곧바로 원인 규명 및 채취 교정 조치하고, 검역작업을 재개하여야 함. 별도로 작업의 잠정 중지 상황을 즉시 방검국에 통지
- 검역에 합격된 신선과일에 대해, 식물검역소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상 신선과일 검역을 통해 복숭아심식나방 미 감염 및 기타 방검국 지정의 검역 유해생물, 검역시기, 포장장소 대표번호 또는 명칭 등 자료를 명료하게 기재함
- 검역 합격 후 14일이 경과된 미 수출 신선과일은 반드시 재검사하여 수출 식물검역증명서를 재발급해야만 대만으로 운송할 수 있음
- 중계 운송의 예방규정
 - 제3지역을 통한 중계운송의 신선과일은 대만 「식물 또는 식물산품운수도중경유 특정역병충해구역 수입검역 작업방법」의 규정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
- 수입검역
 - 수입검역의 과정, 방법 및 샘플은 대만 「식물방역검역법」 및 관련 검역규정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 식물검역소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의 미 첨부 혹은 증명서상 기재사항이 본 요점과 부합되지 않는 신선과일은 수입하지 않음
 - 신선과일의 포장 상자 위의 표시가 본 요점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지 않음
 - 신선과일의 수입항구 검역 시 살아있는 복숭아 심식나방 발견 시, 해당 신선과일은 반송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함
 - 방검국이 수입검역으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후, 즉시 이를 식물검역소에 통지하고, 처분된 신선과일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 복사본, 포장상자 자료,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 등 관련자료를 제공함

□ 수출작업의 잠정 중단 및 재개

- 식물검역소가 방역검역국으로부터 최초 복숭아심식나방 검출 통지를 받은후, 그 즉시 해당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신선과일 종류의 대 대만 수송 검역을 잠시 중지함

□ 공통 제한사항

1.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2.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필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함
3. 운송 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또는 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를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nding; Delo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 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처리. 검역 전 아래 중 하나와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 (1) 완전 밀폐식 포장
 -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의 방충망을 덮어야 함
 -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함
 -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자를 열어선 안 됨
 - 해당 종류의 신선과일에 대해 대 대만 수송 작업 잠시 중지시기 전, 기 발급한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의 해당 종류의 신선과일은, 잠시 중지한 날의 명일부터 기산하여 7일내 선적(항공기)하여 대만으로 운송했지만, 엄격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 기간에 만약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할 시, 상기 “수입검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식물검역소는 해당 신선과일에 대해 대 대만 수송 작업을 잠시 중지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교정조치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보고를 방검국에 송달하여 심사함

- 만일 조사결과 작업에 오류가 있음이 뚜렷하고 교정조치를 해야 할 경우, 식물검역소는 확인교정의 보고를 제출해야 함. 방역검역국은 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집행 교정 조치의 인증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함
 - 방검국을 통해 심사 인가한 식물검역소의 보고 또는 현장 검사증명 교정 조치 후, 해당 신선과일의 대 대만 수송에 대해 잠시 중지한 조치를 취소함
4.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5.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
 6.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 *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서양꽃 삼주벌레
 - * *Carposina sasakii* : 복숭아심식나방
 -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줄기선충
 - *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 화살깎지벌레
 - *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구근진드기
 -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감자나방
 - *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 감자 역병균 A2타입

가. 음료 및 식수 검역

- 음료류의 위생기준 (2011.07.29 수정)
 - 본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름
 -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물의 품질은 식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음료의 중금속 최대 허용치 : 신선/농축 과일주스와 야채주스는 제외됨

○ 미생물 허용치

음료 분류	일반세균수 (cfu/mL)	대장균수 (MPN/mL)	병원성 대장균수 (MPN/mL)	살모넬라
생과일즙, 생야채즙 (살균처리 무)	-	103이하	10 이하	음성
환원 과즙, 환원 야채즙, 퓨레	104이하 (포장 시 100 이하)	103이하	음성	음성
발효 과즙 또는 야채즙	-	10 이하 (포장 시 음성)	음성	음성

※ 자료원 : 식품약품관리국 (食品藥物管理局)

나. 일반 가공식품 검역

일반식품의 위생기준

- 근거 :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식품은 본 규정에 따름)
- 제품은 그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곰팡이, 국제적 이슈, 기생충이 발견되면 안 됨
- 미생물 제한치

제품 분류	대장균 수 (MPN/g)	병원성 대장균수 (MPN/g)
준비처리 없이 제공되는 일반 식품 (세정, 탈피, 가열, 조리처리 등)	103 이하	음성
준비처리 후에 제공되는 일반 식품 (세정, 탈피, 가열, 조리처리 등)	-	-

*자료 : 식품약품관리국 (食品藥物管理局)

식품 중 진균독 제한기준(食品中真菌毒素限量標準)(2012.09.03 수정)

- 근거 :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
- 식품 중 아플라톡신(Aflatoxin) 허용치

식품 분류	아플라톡신 허용치 (아플라톡신 B1, B2, G1, G2 포함)
다른 식품	10 ppb 이하

※ 자료원 : 식품약품관리국 (食品藥物管理局)

○ 식품 중 파툴린(Patulin) 허용치

식품 분류	파툴린 허용치
사과주스와 사과주스를 포함한 혼합 음료	50 ppb 이하

※ 자료원 : 식품약품관리국 (食品藥物管理局)

< 최근 검역 사례 >

◇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신선 배의 반송·폐기 발생(2017)

검역소	검출농약	중량(kg)	처리사항
高雄	Flufenoxuron 0.04ppm, Thiacloprid 0.02ppm	1,248	반송혹은폐기
	Indoxacarb 0.07ppm, Diflubenzuron 0.32ppm	936	“
	Thiacloprid 0.07ppm	624	“
台北	Fenhexamid 0.04ppm	300	“
	Flonicamid 0.03ppm	15,855	“
	Flonicamid 0.03ppm	15,750	“
	Etofenprox 0.01ppm	16,170	“
	Etofenprox 0.02ppm	15,855	“

VII. 배의 대만 수출확대 방안

- 시장 진입 전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협상 및 상품 경쟁력 강화
 - 대만은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시절 이들 국가의 선진문화 등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 중국보다도 일본과 미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 한국 상품은 일본·미국 상품과 비교해 품질 등을 다소 낮다고 보고 저가로 거래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상품협상 때에는 품질 비교분석 자료 등을 제공하여 유리한 가격협상 추진 필요
 - 대만은 중소기업이 많아 소량 수입 비중이 높으므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바이어와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점진적인 네트워크 확대
 - 대만 바이어는 한 번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만은 화교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화교권에 대한 상품 테스트시장 역할도 하고 있어 바이어의 소량주문이라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대만 바이어에 대한 신용도 등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수출 Risk 최소화
 - 바이어는 시장성 있는 수입상품이라고 판단하면 독점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의 대만 내 유통(판매)망 보유 등을 파악하여 결정 필요
 - 바이어가 소량 주문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마켓테스트를 통해 상품의 시장반응을 관찰 후 거래를 확대하려는 차원일 수 있어 바이어의 정확한 수입의도를 파악하여 가격 등 협상 추진 필요
 - 기업에 속한 바이어의 경우 수입품목별 담당자가 달라 부서, 담당품목, 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효과적인 협상 추진 등이 필요
 - 바이어에게 중요한 자료(중요 서류, 회사·상품 소개서, 거래제의서, 가격표 등) 등의 송부는 우편 등의 활용이 필요 함
 - * 회사 전산환경에 따라 E-Mail이 스팸처리 또는 차단되거나, 컴퓨터의 언어처리방식(국가별로 다소 다름)이 상충되어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만 소비자에게 한국 배를 지속 각인 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 프로모션 실시
 - 대만 소비자들은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구매와 연계되는 비중이 높음
 - 최근 대만의 한류 열풍을 활용해 수출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프리미엄 상품으로써의 이미지 부각 필요
 - * 한국산 배는 일본산에 못지않게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대만은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이 다소 소극적이므로 바이어를 활용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비확충 홍보활동 전개
 - 대만 개최 박람회 참가, 대형유통업체를 활용한 판촉행사 등을 통해 대만 바이어·소비자에게 고품질의 한국 배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표출시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충성고객 확충

- 수출대금 회수불능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책 마련 필요
 - 대금결제는 주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수출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인수인도조건(D/A)의 수출을 추진할 때에는 수출 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해 수출보험 가입 또는 바이어에 대한 사전 신용평가(검증기관 활용) 등 추진 필요

- 배 수출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만의 동양배 쿼터물량 배정업체 관리 강화
 - 대만의 동양배 수입량 일본산이 한국산보다 많았으나 2016년 한국산 수입이 일본산 수입을 크게 초과함에 따라 일본의 대만 바이어 확보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
 - 한국의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시장확대 노력 추진
 - 대만 정부의 관련부처의 홈페이지 등을 수시 검색하여 현지의 변동상황 등 수시 파악 등 실시 필요

대만 내 한국 정부·공공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 (886-2-)
한국대표부(재외공관)	台北市 基隆路1段 333號 15樓 6室 (1506室)	2758-8320~5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台北市 內湖區 忠孝東路4段 221號 10樓 102室	2740-5040
KOTRA 무역관	台北市 基隆路1段 333號 22樓 14室 (2214室)	2725-2324
한국인삼공사	台北市 內湖區 瑞光路 550號 2樓	2658-5055

대만 정부부처

기관명		연락처 (886-2-)	홈페이지	주요 업무
재정부	관세총국	2550-5500	http://web.customs.gov.tw	관련 수입규제 및 관세율
경제부	표준검험국	2343-1700	http://www.bsmi.gov.tw	수출입 제품 검사 및 관련 자료
	국제무역국	2351-0271	http://cweb.trade.gov.tw	무역 관련 법령 및 자료 (통계 및 업체 정보 등)
행정원 위생서	위생서	8590-6666	http://www.doh.gov.tw	건강식품 등록 및 관련 제도
	약물식품 검역국	2653-1318	http://www.nlfd.gov.tw/	식품, 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수출입 검역 관련 자료
	식품 정보 네트워크	2653-1066	http://food.doh.gov.tw	식품 수출입 시 관련 규정
타이베이시 수출입 협회		2581-3521	http://www.ieatpe.org.tw	무역 관련 자료 및 수출입 업체 검색
대만무역네트워크		2725-5200	http://www.taiwantrade.com.tw	무역 정보 포털 사이트

참 고 문 헌

- 농림축산식품부 : 2015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 한국의 주요 배 품종, 배 품종별 생산시기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 통계청 : 농림어업총조사(노지 과수 재배면적 현황, 농작물생산조사, 배 재배 농가의 주된 재배 품종 현황, 과실생산량, 과실류 가공현황)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MIS : 2016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도·소매가격 정보(배 도매가격)
 - KATI : 대만 수출입 Data, 대만의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2006), 2016년 대만 주요 대형유통매장 현황,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건강기능 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2016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대만)
- KREI : 2016년 배 소비량 추정치, 과실류 대만 수출여건 개선 발굴 조사(2010)
- KOTRA : 2017 대만 진출전략
-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 2015 대만인구 현황
- 대만 행정원농업위원회 : 104년 농업통계연보(경지면적 등)
- 대만 경제부 : 대형유통업체의 매출 현황
- 대만 관세총국 : 대만의 관세총국 및 직속세관 등 현황
- 대만수과교역자신망 : 대만의 생산 배 주요 품종 현황
- 대만 행정원농업위원회농량서 : 주요과실산지가격(主要水果農場價格)
- 대만 농산품교역정보역(amis.afa.gov.tw) : 농산물가격시세(產品交易價量走勢圖)
- BMI : Industry Forecast, Consumer Spending-Taiwan-Q3 2017
- 대만은행 : 대만의 소매시장 거래 규모
- 대만 365fruit.com, fruit365.com. momoshop.com.tw : 배 소매가격
- Gloval Trade Atlas : Taiwan Export Statistics, Import Statistics, World Import of Pears Statistics